

월간
재정포럼 1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12월호 제198호

- 현안분석** •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자원조달방식 개선방안 / 이은경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이해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라영재

정책토론포럼 • •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공공정책포럼 • • 대한민국은 인재대국

CONTENTS

권두 칼럼

복지 늘리겠다면 증세해야 · 김영욱 02

현안분석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개선방안
· 이은경 06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 이해원 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 라영재 38

정책토론포럼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52

공공정책포럼

대한민국은 인재대국 72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EU 외 83

정책흐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102

한국 재정개혁 성과, 국내 · 외 학자 최초로 공동 평가 104

이슈&포커스

국내외 학자 “韓 재정제도개혁 정착 단계” 외 109



복지 늘리겠다면 증세해야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 경제학 박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대선 후보의 경제 참모들이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증세 논쟁’에 불을 지피길래 잔뜩 기대를 걸었더랬다. 시동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걸었다. ‘보편적 증세’를 주장했다. 그러자 며칠 뒤 박근혜 후보 측에서 받았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사했다. 지금은 문 후보를 돕는 입장으로 변한 안철수 후보도 한때 자신의 책에서 보편적 증세론을 시사한 바 있다. “소득 중하위 계층까지 능력만큼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을 더 받도록 하자”고 했다.

복지, 필요하다. 더 늘려야 한다.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복지지출 비중이 너무 낮아서다. 2005년 기준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 20.6%인 데 비하면 3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동안 복지지출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다. 양극화 문제도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할 거다. 지니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지만, 이게 도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거했다는 점은 도외시한다. 돈 많은 사업가와 전문직은 빼고 계산한 거다. 당연히 이를 포함하면 분배의 불평등은 더 심할 거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하면 양극화는 더 심할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일부 학자들이 과거 추정한 바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하다.

재정건정성 유지하며 복지도 늘리려면 증세뿐

하지만 양극화를 완화하는 건 정말 어렵다. 복합적인 문제라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도 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려면 세금 말고는 방법이 없다. 국채 발행도 있지만 이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빚을 떠넘기는 것이어서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건 담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보다 5.3%포인트 낮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세까지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9%포인트 낮다. 요컨대 빚(국채 발행)을 내지 않고 적게 거둬 적게

졌다는 이유다. 바뀐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이 튼튼한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한다. 복지도 늘려야 한다. 이걸 당위다.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솔직히 조세부담률이 19%에 불과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다시피 하고, 사회보장에 쓰는 예산이 GDP의 10%도 채 안되는 나라가 무슨 수로 양극화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만 잔뜩 내놓았을 뿐 세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기껏해야 상위 1% 부자의 증세만 얘기했다. 나머지 99% 국민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걸로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야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복지 재원으로 연간 15조원(새누리당)~33조원(민주통합당)이 추가로 필요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든다는 추계도 많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양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54조원이, 민간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54조원(새누리당)~128조원(민주통합당)으로 추계했다. 설령 양당이 스스로 추정한 금액이 맞다고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서민과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고, 조세 감면 등 각종 공제제도를 없애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야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복지 재원으로
 연간 15조원(새누리당)
 ~33조원(민주통합당)이
 추가로 필요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든다는 추계도 많다.**

구체적인 증세방안 마련 필요

이제 거짓이라는 건 지난 연말 과표구간 3억원 초과시 최고소득세율을 3% 포인트 올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된다. 그때 추정된 추가 세수 확보액이 8천억원이 채 안됐다. 최고소득세율 과표구간을 1억 5천만원으로 낮춰도 세수 증대 효과는 겨우 1조원 안팎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이미 너무 높다. 세금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2 대 8'의 사회다. 상위 20%가 내는 세금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9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세금 부담을 늘린다면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탈세와 해외 유출이 현실화될 게다. 법인소득세 인상에도 한계가 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세율이 많이 낮다. 자칫 외자 유치는 물 건너가고,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 현상이 가속화된다. 결국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40%의 면세층과, 세금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40%의 중간소득자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 정도가 남았다.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거나 탄소세 같은 새로

.....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국민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쓴소리도
해야 한다.
복지를 얘기하면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건 누가 뭐래도
포퓰리즘이다.**

.....

운 항목의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긴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증세 언급에 반색했던 건 그래서였다. 복지 논쟁에서 세금 논쟁으로 옮겨가겠구나, 어디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거둘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웬걸, 새누리당은 곧바로 철회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증세 공약만 얘기하고 있다.

‘역시나’ 였다. 표만 쫓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증세를 얘기할 리 없다는 교훈을 재삼 느끼게 해줬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선 안된다는 건 상식이다. 국민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쓴소리도 해야 한다. 복지를 얘기하면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건 누가 뭐래도 포퓰리즘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비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세밀한 증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놓고 국민의 심판을 청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고(高)복지는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더 열겠다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의 고통과 분담을 호소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이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리더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역할이다. 1959년 영국 총선 당시 노동당이 집권할 뻔했다. 선거 운동 내내 노동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결과는 보수당의 승리였다. 노동당이 막판 승리를 굳힐 심산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게 패인이었다. 복지를 내세우면서 세금을 깎겠다는 약속을 영국 국민은 정치적 뇌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외국서 배우자는 주장에는 이미 질려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명백히 예외다. **KPT**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개선방안**
이은경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이혜원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라영재 · 한국조세연구원 경영평가연구팀장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개선방안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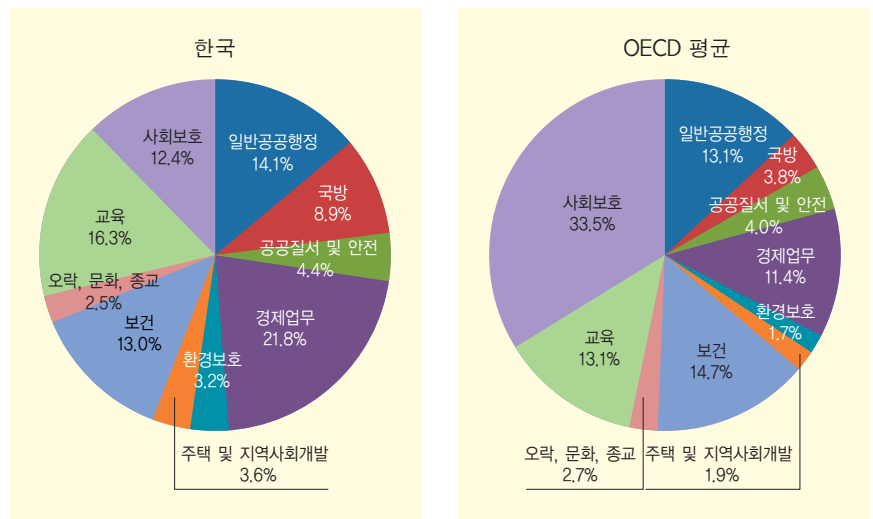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2011년 기준, 한국 중앙정부지출 중 보건지출은 13.0%로 경제업무(21.8%), 교육(16.3%), 일반공공행정(14.1%)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 구조를 보면 사회보호가 33.5%로 가장 높고 보건지출이 14.7%로 두 번째로 높다. 공적부조(사회보호)와 보건을 묶어 복지지출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부지출의 25%를, OECD 국가들은 정부 재원의 48.2%, 즉 절반가량을 복지부문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정부지출 구조(201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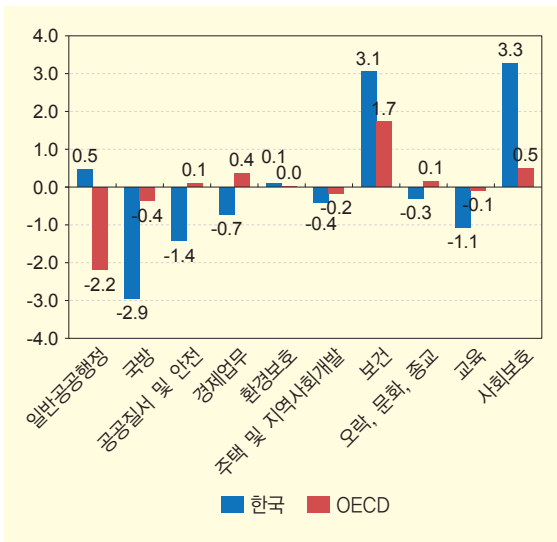


자료: Government at a Glance, 2011, OECD

한국의 정부지출 중 공적부조에 투입된 재원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보건부문에 투입된 재원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두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증가해 왔다. [그림 2]에서 2000년과 2008년 사이 부문별 정부지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출은 보건지출이며, 우리나라 역시 공적부조 증가율(3.3%) 다음으로 보건지출의 증가율(3.1%)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 및 신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 보건지출은 더욱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2000년과 2008년 사이 중앙정부지출 증가율

(단위: %)



자료: Government at a Glance, 2011, OECD

향후 보건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입 확보와 지출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

**향후 보건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입 확보와
지출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부뿐만 아니라 재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확보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II.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1. 개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38조원, 지출은 37.4조원이다. 건강보험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이 3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부지원은 5조원인데, 일반회계 4조원, 담배부담금 1조원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40조원 가까이 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표 1〉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	13.9	16.8	18.6	20.3	22.4	25.3	28.9	31.2	33.6	38.0
- 보험료 등	10.9	13.4	15.1	16.6	18.6	21.6	24.8	26.5	28.7	33.0
- 정부지원	3	3.4	3.5	3.7	3.8	3.7	4.1	4.7	4.9	5.0
국고	2.6	2.8	2.9	2.8	2.9	2.7	3.1	3.7	3.8	4.1
국민증진기금	0.4	0.6	0.6	0.9	0.9	1	1	1	1.1	0.9
지출	14.7	15.7	17	19.2	22.5	25.6	27.5	31.2	34.9	37.4
- 보험급여비 등	14	15	16.2	18.3	21.6	24.6	26.5	30.2	33.8	36.2
- 관리운영비	0.7	0.7	0.8	0.9	0.9	1	1	1	1.1	1.2
당기수지	-0.8	1.1	1.6	1.2	-0.1	-0.3	1.4	0	-1.3	0.6
누적수지	-2.6	-1.5	0.1	1.3	1.2	0.9	2.3	2.3	1	1.6
수지율(지출/수입)	105.5	93.6	91.6	94.2	100.3	101.1	95.3	100	104	98.4

주: 현금수지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2003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단일 재정을 구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는 현재까지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의 복잡성, 가입자 간 부과대상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보험료 부과방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출발하였고 1988년 농어촌에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원화된 부과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단일 재정을 구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는 현재까지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의 복잡성, 가입

자 간 부과대상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이하 ‘지역’으로 표기)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소득과약이 용이한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정률(2012년 5.8%)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득과약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는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재산, 자동차로 부담능력을 추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이에 점수당 금액(2012년 170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체계의 쟁점은 부과대상 소득범위와 피부양자 인정 여부이다. 2012년 9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기반이 확대되기 전까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사용주는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금융 혹은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담능력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 피부양자 인정범위¹⁾가 넓어 실제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은 총소득의 77%를 차지하므로 나

머지 23%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퇴직·양도 소득까지 포함하면 근로소득은 총소득의 70% 차지). 김진수 외(2010)에 따르면 직장 피부양자 중 9%가 5천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가 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다(홍백의 외, 2012).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포함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에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없이 가족원 수대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소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현금유동성이 없는 재산·자동차까지 부담능력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농어민, 영세사업자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퇴직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에 따라 부과방식이 달라진다. 여기서 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 연금, 근로, 농지소득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다. 소득자료가 없거나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는 성, 연령으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능력을 추정하여 재산, 자동차, 과세소득과 함께 평가소득을 산정하고 재산과 자동차를 다시 한번 점수화하여 부과표준소득을 산출한다. 따라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중복부과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고령자에게도 기본구간 점수가 부여되어 가족원 수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한다(홍백의 외, 2012). 반면 과세소득 500만원 이상인 세대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한다. 재산보험료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소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현금유동성이 없는 재산·자동차까지 부담능력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임차주택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반영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전셋값 인상 시 은행대출이 증가하였더라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출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3년 단위로 20%씩 감가상각한다.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미만인 세대는 80.8%(152만 8,779세대)이다(김주경, 2011).

〈표 2〉 가입자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2012년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근로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종합소득 - 500만원 초과: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정방식	보수월액×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170.0원)
납부자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자료: 복지부 보도자료 (2011년 11월)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재산 9억원 이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그러나 연금·기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

**직장가입자의 부양률은
1.48로 지역가입자의 부양률 1.03보다 높다.
이는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보다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48%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로부터 징수된다.

〈표 4〉 직역 보험료 추이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직장	12.12 (0.72)	13.90 (0.74)	16.35 (0.75)	19.03 (0.76)	20.24 (0.77)	22.08 (0.78)	26.14 (0.79)
지역	4.81 (0.28)	4.91 (0.26)	5.38 (0.25)	5.94 (0.24)	5.93 (0.23)	6.37 (0.22)	6.78 (0.21)
계	16.93 (1.00)	18.81 (1.00)	21.73 (1.00)	24.97 (1.00)	26.17 (1.00)	28.46 (1.00)	32.92 (1.00)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3. 보험료 부과 현황

2011년 현재 건강보험 가입인구는 4,930만명이며 이 중 직장가입자는 3,326만명, 지역가입자는 1,604만명이다. 비율로 보면 직장 대 지역가입자 비율은 7:3 정도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부양률은 1.48로 지역가입자의 부양률 1.03보다 높다. 이는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보다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48%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보험료 재원 중 직장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80%에 육박하지만 직장가입자 적용인구(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33,009원)는 지역가입자(35,022원)보다 2,000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수가 많고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현재, 보험료 수입은 32,92조원이며 이 중 80%(26조)는 직장가입자로부터, 20%(7조원)는 지역

〈표 3〉 직역 가입자 수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직장	소계(비율)	27,233,298 (0.57)	28,445,033 (0.60)	29,424,424 (0.62)	30,416,577 (0.63)	31,412,740 (0.65)	32,383,526 (0.66)	33,256,574 (0.67)
	가입자	9,745,597	10,415,340	11,174,872	11,616,958	12,145,781	12,763,729	13,396,713
	피부양자	17,487,701	18,029,693	18,249,552	18,799,619	19,266,959	19,619,797	19,859,861
	부양률	1.79	1.73	1.63	1.62	1.59	1.54	1.48
지역	가입자(비율)	20,158,754 (0.43)	18,964,567 (0.40)	18,395,250 (0.38)	17,743,141 (0.37)	17,200,794 (0.35)	16,523,269 (0.34)	16,042,591 (0.33)
	(세대수)	8,384,173	8,107,304	8,141,761	8,058,086	8,110,855	7,940,227	7,887,563
	부양률	1.40	1.34	1.26	1.20	1.12	1.08	1.03
계	47,392,052	47,409,600	47,819,674	48,159,718	48,613,534	48,906,795	49,299,165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표 5〉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단위: 원)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직장	가입자	57,092	62,430	69,169	70,250	73,399	82,802
	적용인구	20,713	23,449	26,304	27,049	28,659	33,009
지역	세대	49,688	55,054	61,982	61,902	67,168	72,139
	적용인구	21,050	24,065	27,736	28,652	31,899	35,022
전체	적용인구	20,851	23,690	26,837	27,620	29,765	33,670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낮은데 비해, 보험료 대비 급여는 지역가입자보다 높다. 2011년 기준,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은 직장가입자는 1.82, 지역가입자는 1.77이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더 높은데, 특히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1인당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더 높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데 반해, 보험급여 혜택은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한 후 20개의 보험료 분위별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1인당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더 높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데 반해, 보험급여 혜택은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보험료 5분위까지 1인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지역가입자가 더 높지만 5분위 이상에서는 직장가입자의 1인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더 높다. 또한 눈여겨 볼 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1분위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출이 직역 전체 어떤 보험료 분위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자 1분위 가입자의 평균 급여비 지출이 지역가입자 평균의 2배에 가깝고 보험료는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저소득층으로 추정되므로 보험료가 낮은 것은 당연하지만 급여비 지출이 타 보험료 분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적용인구 1인당 보험급여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직장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27,988	248,556	281,392	315,642	324,590	343,905	396,106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급여비	402,567	469,463	527,574	562,124	624,423	691,174	722,615
지역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30,844	252,600	278,775	332,837	343,828	382,790	420,264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급여비	369,442	435,093	495,641	543,743	613,314	694,060	742,857
계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29,248	250,212	284,277	322,039	331,441	357,185	404,039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급여비	388,017	455,360	515,096	555,286	620,467	692,159	729,262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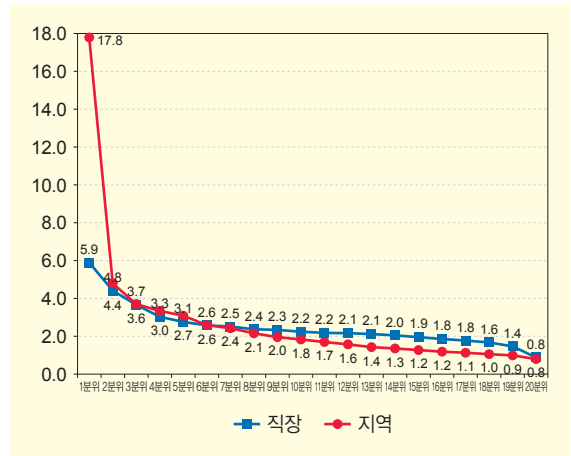
〈표 7〉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단위: 원, %)

보험료 분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보험료	급여비	비율	보험료	급여비	비율
1분위	8,945	52,621	5.9	5,344	95,014	17.8
2분위	11,583	50,827	4.4	11,725	55,903	4.8
3분위	13,870	50,430	3.6	13,404	49,069	3.7
4분위	16,466	49,369	3.0	14,470	48,050	3.3
5분위	18,507	50,731	2.7	16,430	50,232	3.1
6분위	20,332	52,182	2.6	18,759	48,397	2.6
7분위	21,777	53,984	2.5	20,712	49,724	2.4
8분위	23,237	55,005	2.4	23,436	50,370	2.1
9분위	24,575	57,040	2.3	26,129	51,181	2.0
10분위	25,822	57,478	2.2	28,025	50,699	1.8
11분위	27,290	59,132	2.2	30,630	51,854	1.7
12분위	28,329	60,567	2.1	33,672	52,661	1.6
13분위	29,382	61,527	2.1	36,633	52,463	1.4
14분위	30,823	62,147	2.0	39,635	53,017	1.3
15분위	32,249	62,661	1.9	42,645	52,884	1.2
16분위	34,537	63,628	1.8	45,976	53,301	1.2
17분위	37,191	65,353	1.8	50,238	54,727	1.1
18분위	40,321	65,799	1.6	56,174	57,674	1.0
19분위	45,610	65,582	1.4	66,184	62,715	0.9
20분위	82,475	65,612	0.8	97,990	74,329	0.8
평균	28,866	58,084	2.0	33,911	55,713	1.6

주: 분위는 보험료 부담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그림 3] 직역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지출 (2010년)



주: 분위는 보험료 부담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Ⅲ.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개선방향

1. 과도기적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다음과 같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2012년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부과기반 확대

보건복지부(2012)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고소득'의 정의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을 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율은 2.9%로 책정하여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가입자 부담 보험료율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5,000명(직장가입자의 0.3% 수준)이며 이들은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산정액이 월 7,810만원 초과 시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동 정책의 시행 결과 연 2,158억원의 재정수입이 확충될 전망이며, 보험료 부과기반은 향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2) 피부양자 조건 강화

2012년 9월부터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금, 기타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동 제도를 시행하면 약 1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월평균 19만 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연 278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2012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연간 4천만원 초과 연금 소득자인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2013년 초로 연기되었다.

3)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의 30%를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월세금이 상승하였을 때 부채로 충당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을 설정하여 그 이상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고,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전월세금에서 공제하며, 재산 보험료 상승 시 전월세금은 300만원 공제 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배기량 기준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보험료 부담은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더불어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장기적인 개선방안

1)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더불어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직역 간 구분을 폐지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틀을 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공단 채신위원회는 지난 4월 직역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 단위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 전체에 대해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부과대상이므로 형평성의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개인 단위로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합의를 해야 할 이슈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슈는 소득의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으로 볼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과세)과 분류소득(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 데이터만 제공하고, 퇴직·양도 소득과 같이 장기형성소득으로 구성되는 분류소득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시스템하에서는 건강보험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해야 할 이슈(부과대상소득의 종류, 범위, 소득별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자, 건강보험료 상한들이 존재한다.

공단이 파악할 수 있는 종합소득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상 6가지 소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5가지 소득에 있어서는 일부를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²⁾한다. 종합소득에 포함된 6가지 소득 모두에 대해 보험료 부과가 적당한지, 분류소득인 퇴직·양도 소득까지 보험료 부과소득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이론적·논리적으로 고찰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제구조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편이고, 효율성 저해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안중석, 2012),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가가 타당한지 고찰해야 한다.

두 번째 이슈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총수입 금액으로 할 것인지 해당 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이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과대상 소득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사업주는 사업 소득금액) 100%이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인데 소득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다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총급여액의 20%만 반영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소득금액 100%를 반영한다. 만약 부과대상 소득을 총수입 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통일하는 경우, 소득공제항목이 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부과기반이 상당히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한해서는 총수입금액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나머지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에 한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해당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득별 부과기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 제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슈는 각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이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외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기반이 넓어졌으므로 현재보다 보험료율을 조금 낮추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율은 모든 소득에 정률로 부과할 수 있고 소득 종류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 요율 차등화는 프랑스의 CSG를 참조하면 좋은데, 프랑스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율(7.5%)을 기준으로 자본소득(8.2%), 도박 및 복권소득(9.5%)과 같이 불로소득에는 요율이 높고 노인들의 주 소득원인 연금소득(6.6%)에는 요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CSG 부과대상 소득은 근로소득(earned income), 대체소득(연금, 장애, 실업 등 공적부조), 투자소득(income from fixed-income investment)의 경우 총수입금액(gross amount)이고,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capital gains tax) 등에는 해당 소득금액(net amount)이다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2011). 독일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과세 전 소득(assessable income)이다 (Hoyer, 2009).

네 번째 이슈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직역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 부과체제로 개편하더라도 여전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룹이 존재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그룹과

2)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지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배당금품,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그룹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대학생 자녀 등은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급여 혜택을 받는 그룹이 존재하면 여전히 보험료 지출 대비 수입이 부족하여 재정 고갈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그룹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만처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입자의 보험료가 피부양자 수에 일정 수준(3명까지) 연동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BNHI, 2011). 후술하겠지만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보험료 예상 수입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국고지원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특정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면제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CSG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에는 7.5% 대신 3.8%로 절반으로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다(WHO, 2010b). 독일은 저소득층, 농어민, 학생, 연금수령자, 실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장애인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독일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연금수급자와 연금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실업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사회부조 수급자와 연방고용청이 절반씩 부담한다(WHO, 2004).

또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보험료 책정이 어려운 그룹(현 지역가입자의 일부)이 존재한다.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 중 소득파악률은 44%에 불과하다. 나머지 56%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파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우 보험료 납부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험료 책정이 누락되는 소득 미파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급여 혜택을 받는 그룹이 존재하면 여전히
보험료 지출 대비 수입이 부족하여
재정 고갈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그룹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룹에 일정액의 기본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제안이 있다(김진수 외, 2010). 소득 미파악 그룹의 대부분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기본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는 어렵다. 한가지 방법은 대만과 같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농어민에 있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다(BNHI, 2011).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3,009원, 지역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5,022원으로 상당히 높다. 다른 대안은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슈는, 건강보험료 상한을 얼마로 설정하는가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월 보수월액 7,810만원이다(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 따라서 월보수월액 이 7,810만원 이상인 경우, 7,810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월보험료를 226만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한다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에 대한 규정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 상한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부과체계 변화뿐만 아니라 상한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 비율이 높으면 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다. 따라서 부과체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국고지원 방식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다.
결정되지 않은 익년도 보험료 수입 예상치에
연동되기보다는 국고지원의 명분이 존재하는
곳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개편 전후 개인별 보험료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자료(소득, 보험료 등)가 있다면 제도 개편 시 예상보험료와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를 비교하여 예상보험료가 실제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즉 제도 개편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룹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직역 구분을 없애고 보험료율 5.8%인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을 확대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 변화 양상을 추론해보자. 직장가입자 중 근로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재산과 자동차가 빠지고 모든 소득이 100%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와 인하되는 경우가 혼재할 것이다. 만약 집과 자동차는 있되 일정한 월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라면 보험료가 하락할 것이고, 연금소득 등 월단위 종합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2) 국고지원 방식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은 익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액수를 정하는데 이 중 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증진기금(기금수입의 65%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재원 38조원 중 정부지원은 5조원 (13.2%)이고, 이 중 4.1조원은 일반회계에서, 0.9조원은 국민증진기금(담배부담금)에서 지원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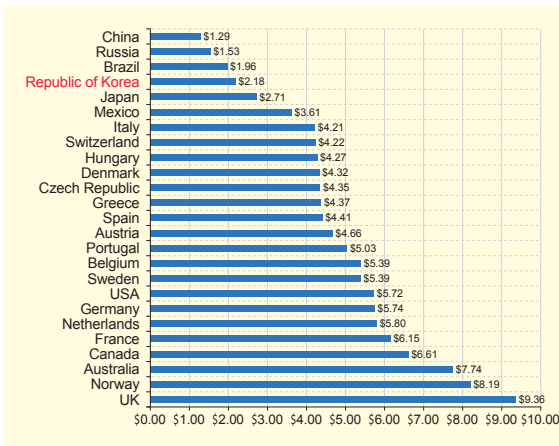
그런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국고지원 방식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다. 결정되지 않은 익년도 보험료 수입 예상치에 연동되기보다는 국고지원의 명분이 존재하는 곳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나 유아,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지원하는 것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쉽다.

또한 국고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 및 기금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식이 존재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최근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의 간접지표인 소비에 과세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하지는 안이 거론된 바 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전반적인 요율 인상은 건강과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비에 과세하여 수입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한다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비재화(건강유해식품)에 과세하여 그 재원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것은 논리적인 정당성을 갖는다. 대표적인 건강유해식품인 담배, 술, 비만유발식품에 과세하여 그 세수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원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유해식품 소비 감소를 통한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수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을

갖는 대신, 세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담배가격(2,500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한국 남성의 흡연율(40%)이 높음을 고려할 때 담배부담금 인상은 흡연율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담배가격이 상승하면 담배수요가 감소하지만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문헌의 평균치)로 비탄력적인바, 총담배소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현재는 건강증진기금 수입의 65%만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동 제약을 없애고 담배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원을 상당폭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담배 1갑 가격의 국제 비교(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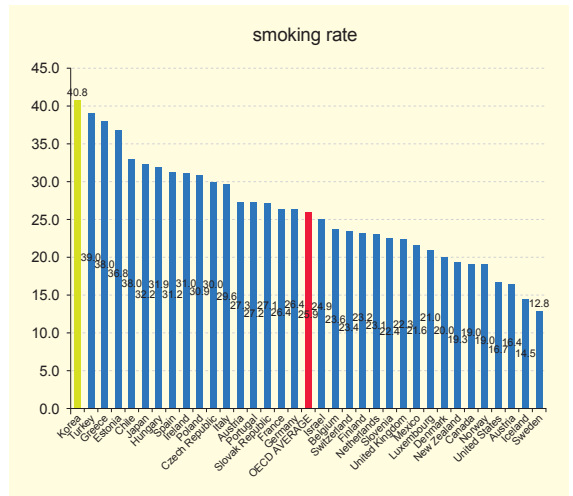


주: 담배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주 종목의 가격
 자료: WHO(2011)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수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을 갖는 대신,
 세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림 5] 성인 남성(15세 이상)의 흡연율 비교 (2010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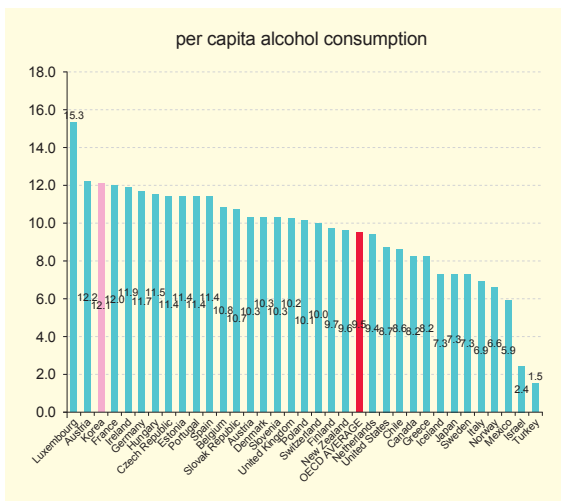
주: 매일 흡연하는 사람들의 비율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주류의 경우에는 이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술 소비량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다. 주류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주세부담금 부과 시 가격인상률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작아 주류 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주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는 최근 비교적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식품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 과세수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류세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는 국가들로는 뉴질랜드, 태국, 프랑스가 있다(조성기 · 전해조, 2010).

[그림 6] 1인당 술 소비량 비교 (리터), 2010년 기준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아울러 비만유발식품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만을 유발하는 정크푸드, 예를 들면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 등의 소비에 과세하여 그 세수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하지는 논리이다. 작년 덴마크,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 정책을

도입하지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 물가인상, 품목별 차별과세의 어려움 등으로 비만세 도입을 반대하였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성인의 과체중 및 비만을 증가 추세를 볼 때 세수입 확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비만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서라도 비만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자원 조달방안

지금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총재정을 보험료와 국고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자원조달 방안에도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WHO(2010a)에서는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수입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조달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래 <표 8>에서 5개의 자원조달 메커니즘을 나누어 정리하였고 각 정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도 명시하였다. 소개한 자원조달방식에서는 정부의 총수입을 늘려 건강보험으로 배분되는 재원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목적세로 책정하여 건강보험 재원에 직접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는 최근 비교적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식품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 과세수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수익성 높은 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비교적 거래 빈도가 높은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정책은 관련 업계의 반발로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조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관광 및 여행산업에 대한 과세는 자국민

〈표 8〉 건강보험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과세 방안 소개

메커니즘	제안방안	고려사항
특정 산업 및 수익성 있는 대기업에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은행세(Bank Levy):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0.05~0.1% 과세 - 브라질의 기업수익에 대한 사회보장세 (social contribution on new corporate profits) - 호주의 천연자원세 (mineral resources rent tax): 철, 석탄, 광산회사 수익이 12% 초과 시 초과수익에 대한 30% 과세 - 가봉은 통신회사에 대해 과세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위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이외에 추가적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 - 조세수입은 상당할 것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비만유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는 설탕과 초콜릿에 과세: 건강보다는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함 - 호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유해식품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 - 산업계의 반발 - 역진성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 거래에 과세 - 아르헨티나: 2001년부터 당좌계정 (current account) 입출금에 대한 과세 - 브라질: 2001년~2007년 은행 출금에 대해 0.38% 과세, 수입을 건보재정에 투입, 2009년 해외 주식 및 채권 거래에 2% 과세 - 잠비아: 저축 및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medical levy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교란 - 금융시장의 협조 필요
관광 및 여행 관련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비행기표에 사회연대세 부과 - 환전세: 관광객이 자국통화로 환전 시 과세 - 외국인 입국세: 특히 럭셔리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행정비용
특정 소비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재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요트, 수입시계, 대형차 · 불가리아: 고급승용차와 주택 · 인도네시아: 사치재 소비 · 미국: 비싸고 커버리지가 좋은 민간의료보험 구입에 대한 Cadillac Tax -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휴대폰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10센트 과세하여 교육재정에 총당할 것을 정부 제안 - 프랜차이즈 제품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재분배 효과

자료: WHO(2010a)

의 조세부담은 높이지 않으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치재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V. 맺음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7,800만건 중 82%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다가 은퇴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민원의 주 내용

중 하나이다. 직역을 구분하는 현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직역에 따라 부과대상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과약이 힘든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과약이 확실한 본인들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값 인상 혹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아도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동일한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로 등재되면 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급여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연대성 원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아울러 직역에 상관없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하에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료를 내야 하는 기이한 상황도 연출된다.

향후 고령화, 소득증대, 신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³⁾으로 운영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급여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연대성 원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아울러 직역에 상관없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하에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직역 구분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정책적 이슈들(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직역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면 국고지원 액수 및 방식에 있어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연동하여 설정되는데,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 수입기반이 확대되면 정부보조금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 등 지급할 명분이 있는 특

정 그룹에 한정할 수 있다. 또한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대로 일반회계와 담배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건강유해식품(술, 담배, 비만유발식품)에 대한 목적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는 건강보험 재원 확보 뿐만 아니라 동 식품의 소비 감소를 유발하여 미래의 로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통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데 있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75% 이상인데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50% 미만이다. 따라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가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수입 증대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한다면 어떠한 수입 증대 방안도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란 위해서 수입의 안정적 확보는 최소한의 요건이고,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을 낮추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이다. 지출을 줄이지 않고 증가하는 지출에 맞추어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입원으로서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제3의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되는 것처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식에 있어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제비 절감 이외에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일반조세 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재원을 마련함. 그러나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만으로 100%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추세임.

〈참고문헌〉

- 김주경, 『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1. 10. 26.
- 김진수 외,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 건강보험료 수준별(20분위) 분류 중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년 5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2011.1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9월부터 고액의 임대 · 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채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2011.08.28.
- 안중석,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조성기 · 전해조, 『주류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타당성 검토』, 한국주류연구원, 2010.
- 홍백의 · 배지영 · 박미희 · 강준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 ·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1호, 2012: pp.199~231.
-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B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2011 Annual Report,” 2011.
- Hoyer, Jens Martin, “Social Health Insurance in Germany and the Market Position of the TK: Current Changes and Future Challenges,” Techniker Krankenkasse, 2009.
- Ministr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L’industrie, The French Tax System, 2011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Resource Mobilization Mechanisms for Raising Additional Domestic Resources for Health,” World Health Report Background paper 13, 2010a.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France, Health system review,”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Vol. 12, No. 6, 2010b.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ermany,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04.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I. 들어가며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hwlee@kipf.re.kr)

이 세상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부자들이 어려운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여 부자들의 세율을 높이라고 목청을 높인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절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탈세’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다.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 유도나 차명계좌 관리 등 고질적인 불법 탈세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탈세가 문제되는 가장 명시적인 이유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데 있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입 증대를 통한 세원 확보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 증세이든 보편 증세이든 명시적인 증세는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 없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탈세를 줄이고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 전반에 만

1)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소득탈루율(탈루소득/신고소득+탈루소득)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27.0%, 2008년 44.6%, 2009년 37.5%로 보고된다(구광희·박무현·김영락, 2010).

연한 탈세였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제고하여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성실신고와 자발적인 납세순응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전제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국민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확대나 탈세에 대한 징벌수위를 높이는 등 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실납세의무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납세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이다. 국민의 납세의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탈세에 대한 법적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더 과감한 탈세수법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기제 중 하나가 납세의식의 제고라는 전제하에 납세의식 수준을 계량화하는 지표를 생성하고,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납세의식은 관찰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며,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전승훈·김재진(2002)은 납세의식을 납세행태의 근저를 형성하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이라 정의한 바 있으며, 이는 이후 납세의식 관련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전승훈·김재진(2002)과 박명호 외(2008)에 기초하여 납세의식을 조세제도 일반에 대해 가진 개인의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으로 간주하였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세부 요인들을 측정하고자

국민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서는 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실납세의무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납세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이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납세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세부 요인들은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적 규범이다.²⁾ 구체적으로 ‘성실납세의향’은 세금을 기꺼이 내려는 자세(willingness to pay taxes)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의향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납세의향을 포함한다. ‘조세이해도’는 조세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이해도를 의미한다. ‘조세형평도’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으로 소득수준별 공평한 세부담, 비슷한 소득군의 납세자와 비교한 세부담의 공평성, 세금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공공재 수준의 적정성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순응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은 납세순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납세의식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계량화하는 작업은 국민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첫걸음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가 전체 납세자를 대변하지 못하며, 설문조사상의 납세순응과 실제 납세순응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2) 전승훈·김재진(2002)의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세의 적정성, 공평성 및 편의성’, ‘공공재에 대한 신용’, ‘사회적 투명성’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납세자의 약 40%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마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로 표본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세의식 설문조사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신고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한 대부분의 납세순응 연구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이다. 그러나 전체 납세자의 약 40%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마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한겨레신문, 2012. 10. 12.) 납세자로 표본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세의식 설문조사가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직접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라도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설문조사의 설계와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설문조사의 설계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이는 한국조세연구원이 2008년부터 실시해 온 설문문의 3차 조사이다.³⁾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의 성인남녀 2,400명이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인구센서스를 조사 모집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지역별(16개 시도), 성별(남/여), 연령별(20대/30대/40대/50대/60대), 근로형태별(임근근로자/자영업자·사업주/무급가족 종사자/미취업자)로 모집단의 분포와 비례하도록 표본을 설정하였다. 이는 표본의 구성이 선별된 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구성과 최대한 근접하도록 설계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의 진행은 무작위 추출방식(random digit dialing)을 이용한 전화조사로 이루어졌다. 한편,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설문으로는 전체 소득분포에 비해 고소득자가 과소표집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200명을 추가표집하여 조사에 포함하였다. 고소득자 추가표집에 따른 편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다.⁴⁾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사된 유효 표본은 총 2,400명(남성: 1,347명, 여성: 1,053명)이다.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크게 납세의식 관련 변수 설문항목, 납세순응행위 측정 설문항목,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 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인식구조와 가치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전승훈·김재진, 2002; 박명호 외, 2008), 본 연구는 납세의식이 개인의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

3) 1차 조사는 2008년, 2차 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기본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응답자 표본은 매회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새롭게 선정하였다. 1차 조사의 연구결과는 박명호 외(2008)를 참조하길 바란다.
4) 국세통계연보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분포에 따라 개인의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규범에 의해 형성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고, 각각의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항목을 포함하였다. 납세의식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배당된 설문항목은 각각 3~4개이며, 각 설문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뒤 단순평균하여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 지수를 생성하였다. 각 설문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개별 설문항목에 부여되는 가중치에 대한 선택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납세의식 지표와 납세순응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실납세의향은 기꺼이 세금을 내려는 자세(willingness to pay taxes)를 의미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의향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납세의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설문조사에서 성실납세의향은 세금을 낼 때 드는 생각과 가상적인 상황(자영업자일 경우, 부동산 매매 시)에서의 성실납세의향을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세금을 낼 때 드는 생각에 대한 응답으로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낸다’는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으로, ‘들킬 가능성은 낮지만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는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또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성실납세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세금을 낼 때 드는 생각과 더불어 응답자가 ‘만약 자영업자라면-’ 또는 ‘만약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관련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성실납세의향 지수를 생성하였다.

조세이해도는 응답자가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세금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와 구체적인 세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하여 생성하였다. 주관적 이해도는 응답자가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

성실납세의향은 기꺼이 세금을 내려는 자세를 의미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의향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납세의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고 생각하는지를 4단계(매우 잘 알고 있음/대체로 잘 알고 있음/대체로 잘 모르고 있음/전혀 모름)로 구분하여 물었으며,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목으로 부가가치세율, 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최소금액을 포함하였다.

조세형평도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세 가지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자신과 다른 소득군의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자신이 속한 소득군의 평균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그리고 자신의 납세수준과 조세의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공공재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교환의 형평성’(exchange equity)이다. 조세형평도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목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배분의 형평성 여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 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납세순응 관련 사회규범 지수는 3차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사회규범은 크게 기술적 규범(descriptive social norm)과 명령적 규범(prescriptive social norm)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what others do”)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관이나 태도

납세순응과 관련하여 명령적 규범이 작용하는 기제는, 탈세행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을수록 탈세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높은 납세순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를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납세순응에 적용한 관련 연구들은 준거집단의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반면, 사회 전반에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의 납세순응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고한다(Cialdini, Reno, Kallgren, 1990; Reno, Cialdini, Kallgren, 1993; Wenzel, 2004). 본 설문조사에서는 납세순응과 관련한 기술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 또는 ‘주변 동료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사회규범 중 명령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what others think about certain behavior”)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순응과 관련하여 명령적 규범이 작용하는 기제는 탈세행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을수록 탈세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높은 납세순응을 보인다는 것이다(Webley, Cole, Eidjar, 2001). 반면, 준거집단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납세순응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본 설문조사에서 명령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항목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

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이며, 기술적 규범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과 주변동료들의 인식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종합하여 납세 관련 사회규범 지수를 생성하였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측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임을 강조하여도 혹시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또는 수치심에 의해 응답자가 탈세경험을 은닉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실제 납세순응 대신 가상적인 상황에서 납세순응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신고자료의 활용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한 납세순응 여부 측정에는 상당한 측정오차가 내재되어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응답자의 납세순응 여부를 관찰하고, 이와 더불어 지난 3년간 실제 납세순응 여부도 질문하였다. 가상 납세순응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응답자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매출을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신용카드로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자가 할인조건을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할 경우 응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한편, 실제 납세순응행위는 지난 3년간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계상했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 시 축소계약서 작성 여부, 사업자일 경우 매출을 축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개인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moderate)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납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

〈표 1〉 설문조사의 구성

변수	구성요인	설문항목	
납세의식	성실납세의향	세금을 낼 때의 태도	- 세금을 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가능하면 조금이라고 줄이고 싶다/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가상 상황에서의 성실납세의향	- 만약 자영업자라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만약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세이해도	주관적 이해도	-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 이해도	- 부가가치세율 -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조세형평도	수직적 형평성	-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수준별로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평적 형평성	- 비슷한 소득군의 납세자와 비교하여 본인의 조세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환의 형평성	-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규범	기술적 규범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령적 규범	-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변동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납세순응	실제 납세순응	- 지난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이나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소득이나 공제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지난 3년 동안, 국세청에 매출이나 비용을 신고할 때 실제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상 납세순응		- 가상 시나리오 1: 레스토랑 운영 시 증빙서류가 없어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이 없는 현금매출액 1천만원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가상 시나리오 2: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는데 업주가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할인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지역, 연령, 소득, 교육수준, 종교, 주택소유, 배우자 유무, 복권구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배우자 유무, 종교, 개인의 위험선호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복권구입 여부이다.

III. 설문조사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약 56%는 남성이며, 표본의 평균 연령은 39세이다.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 포함)이 57%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8%, 중졸 이하가 6%, 대졸 이상이 9%를 차지한다. 근로형태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3%가 임금근로자, 약 24%가 자영업자/사업주, 나머지는 무급가족 종사자 또는 무직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소득수준(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연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55.2%)이 1천만~4천만

국세청 통계연보(2010)에 의하면, 과표소득이 면세점 미만으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세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는 전체 납세자의 약 40%에 이른다.

원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천만~8천만원 소득구간이 21%,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납세 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4%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경험이 있으며, 약 56%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있으며, 약 52%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에 매출/비용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상당수는 납세경험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통계연보(2010)에 의하면, 과표소득이 면세점 미만으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세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는 전체 납세자의 약 40%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595만 5천명, 종합소득세 면세자 수는 140만명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총 735만명이다(조세일보, 2012. 10. 4.). 납세자의 상당수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납세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본 설문조사는 전체 납세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납세자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세금납부에 대한 태도 및 납세의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임을 밝혀둔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2,400	100.0
성별	남성	1,347	56.1
	여성	1,053	43.9
연령	25~29세	272	11.3
	30~39세	590	24.6
	40~49세	760	31.7
	50~59세	597	24.9
	60~64세	181	7.5
학력	중졸이하	143	6.0
	고졸	671	28.0
	대졸	1,373	57.2
	대졸 이상	213	8.9
소득	1천만원 미만	315	13.1
	1천만원~4천만원	1,325	55.2
	4천만원~8천만원	505	21.0
	8천만원 이상	255	10.6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1,503	62.6
	자영업자/사업주	574	23.9
	무급가족 종사자	105	4.4
	미취업자	218	9.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81	74.2
	배우자 없음	619	25.8
주택 보유여부	없음	1,084	45.2
	1채	1,134	47.3
	2채	154	6.4
	3채 이상	28	1.2
종교	개신교	532	22.2
	천주교	260	10.9
	불교	417	17.4
	기타종교	41	1.7
	없음	1,150	47.9

〈표 2〉의 계속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거주지역	서울	621	25.9
	부산	163	6.8
	대구	106	4.4
	인천	134	5.6
	광주	59	2.5
	대전	59	2.5
	울산	47	2.0
	경기	610	25.4
	강원	54	2.3
	충북	64	2.7
	충남	79	3.3
	전북	65	2.7
	전남	68	2.8
	경북	108	4.5
경남	135	5.6	
제주	28	1.2	
납세 관련 경험	지난 3년 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경험 있음	2,015	83.9
	지난 3년 간 부동산 거래경험 있음	1,335	55.6
	지난 3년 간 사업자의 매출/비용 신고경험 있음	1,243	51.8

2. 납세의식 지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납세의식이 개인의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규범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다음에서는 납세의식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지표를 생성함으로써 납세의식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성한 납세의식 지표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먼저, 세금납부에 대한 태도와 가상적인 상황에서 납세의향에 대한 설문항목을 종합한 성실납세의향

조세형평도와 관련하여, 수직적 형평성 지표는 10.7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행 조세제도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시사한다.

지표는 100점 만점에 74.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의향이 실제 납세순응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시민의 의무로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응답자의 성실납세의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이해도와 객관적 이해도를 종합한 평균 조세이해도 지표는 100점 만점에 44.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인 주관적 이해도와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측정한 객관적 조세이해도는 45점 내외로 비슷하나, 객관적 조세이해도가 약간 더 낮은 수준을 보인다.

조세형평도와 관련하여, 수직적 형평성 지표는 10.7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행 조세제도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소득층이 충분한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다. 반면, 수평적 형평성 지표는 73.9점으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인다. 즉, 비슷한 소득군의 납세자와 비교한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교환의 형평성 지표의 평균값은 52.6점으로 수직적 형평성 지표와 수평적 형평성 지

표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조세형평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세 개 형평성 지표를 종합한 조세형평도 지표는 46.1점이다.

기술적 규범 지표의 평균값은 58.6점, 명령적 규범의 평균값은 46.7점으로 나타나 명령적 규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탈세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종합한 사회규범 지표는 52.6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실납세의향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나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납세의식 지표의 기술통계량

지 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실납세의향	74.5	27.5	0	100
조세이해도	44.2	25.9	0	100
주관적 이해도	46.8	49.9	0	100
객관적 이해도	43.4	27.8	0	100
조세형평도	46.1	22.6	0	100
수직적 형평성	10.7	31.0	0	100
수평적 형평성	73.9	30.9	0	100
교환의 형평성	52.6	38.0	0	100
사회적 규범	52.6	12.4	0	100
기술적 규범	58.6	17.3	0	100
명령적 규범	46.7	15.2	0	100

〈표 4〉는 이상에서 살펴본 납세의식 지표가 주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이해도가 높고 조세형평도도 소폭 높으나, 성실납세의향은 여성에 비해 낮

은 수준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60대의 성실납세의향과 조세형평도가 높은 반면, 조세이해도 는 20대와 60대에서 현저히 떨어짐을 볼 수 있다. 납세 관련 사회규범은 20대에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이해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반면, 성실납세의향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별 성실납세의향은 연소득 1천만원 미만에서 78점으로 가장 높고, 4천만~8천만원에서 69점으로 가장 낮다. 사회규범 수준은 소득과 교육수준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근로형태별로는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에 비해 성실납세의향과 조세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탈세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성실납세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성실납세의향이 높아서 납세순응을 한다기보다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영업자에 비해 성실납세의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세형평도는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에 비해 평균 약 4점 정도 낮게 나타나며, 사회규범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험선호도를 반영하는 복권 구입경험 유무별로 살펴보면, 복권구입 경험이 있는 집단, 즉 위험선호도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실납세의향이 7점, 사회규범이 3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 구입경험이 있는 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조세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형평도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주요 인구특성별 납세의식 지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규범
성별	남성	72.3	47.4	47.6	51.3
	여성	76.2	41.7	45.0	52.5
연령	20대	77.1	40.9	52.5	55.1
	30대	69.8	44.5	44.0	53.2
	40대	72.7	45.8	43.5	52.3
	50대	77.8	46.5	46.5	51.3
	60대	79.8	37.8	49.4	51.9
소득	1천만원 미만	77.6	38.3	45.2	53.1
	1천만~4천만원	72.6	47.1	48.4	52.5
	4천만~8천만원	68.7	52.1	42.8	52.1
	8천만원 이상	71.3	60.2	45.8	50.1
학력	중졸이하	82.4	34.0	42.1	52.3
	고졸	76.1	41.7	46.4	52.2
	대졸	72.2	47.5	46.5	52.9
	대학원졸 이상	68.3	51.0	49.2	53.2
근로형태	자영업자	76.7	47.8	43.0	51.8
	비자영업자	74.0	43.5	46.8	51.8
종교	유종교자	74.4	46.3	46.5	52.1
	무종교자	74.6	41.8	45.7	51.5
위험선호도	복권구입 경험있음	70.9	45.8	46.0	50.6
	복권구입 경험없음	77.6	42.8	46.2	53.3
배우자	배우자 있음	75.2	45.8	45.1	51.7
	배우자 없음	72.6	40.5	48.6	52.3
주택	유주택자	74.3	47.0	44.7	51.6
	무주택자	74.6	41.6	47.5	5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식 지표들은 주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득과 학력수준, 근로형태, 성별, 위험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집단별 차이가 다른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납세의식 지표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조세이해도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보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유종교자가 무종교자보다 높은 조세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성실납세의향에는 소득, 교육수준, 위험선호도가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성실납세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의 성실납세의향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이해도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보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유종교자가 무종교자보다 높은 조세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나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조세형평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여성, 유주택자, 위험선호도가 높은 집단의 조세형평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 연령, 위험선호도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도권 거주와 주택소유 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납세의식 지표들은 주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득과 학력수준, 근로형태, 성별, 위험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타낸다.

〈표 5〉 외생변수가 납세의식 지표에 미치는 영향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규범
소득	-2.065*** (0.737)	5.367*** (0.675)	-0.555 (0.612)	-0.865** (0.337)
교육수준	-3.459*** (0.848)	3.970*** (0.778)	1.914*** (0.705)	0.126 (0.388)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1.300 (1.556)	5.579*** (1.425)	-3.742*** (1.293)	0.162 (0.711)
배우자 유무 (배우자있음=1)	2.289 (1.404)	3.692*** (1.286)	-3.149*** (1.166)	0.181 (0.642)
성별 (남성=1)	-0.652 (1.224)	3.029*** (1.122)	3.369*** (1.017)	0.157 (0.560)
연령	0.201 (0.588)	-0.374 (0.539)	0.982** (0.488)	-1.154*** (0.269)
거주지역 (수도권거주=1)	5.727*** (1.136)	-0.675 (1.041)	0.374 (0.944)	1.437*** (0.519)
주택보유 (유주택자=1)	-0.933 (1.222)	1.552 (1.120)	-2.490** (1.016)	1.386** (0.559)
종교 (유종교자=1)	-1.677 (1.140)	4.680*** (1.045)	1.084 (0.947)	-0.660 (0.521)
위험선호도	-4.544*** (0.938)	0.818 (0.859)	-1.739** (0.779)	-1.493*** (0.428)
상수	84.577*** (3.054)	17.960*** (2.798)	42.141*** (2.537)	55.975*** (1.380)
R2 (표본수)	0.0452 (N=2400)	0.0917 (N=2400)	0.0207 (N=2400)	0.0213 (N=2400)

3.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생성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규범 지표는 납세의식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개인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들 요인들이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적 관점에서 납세의식의 절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의식을 구성하는 세부요인들과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개인의 납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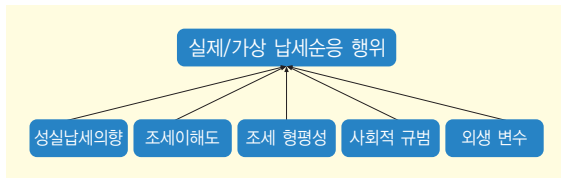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설문조사상의 실제 납세순응과 가상 납세순응이다. 설문조사상의 실제 납세순응 지표는 평균 96.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가상 납세순응은 평균 36.3점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신고자료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개인의 납세순응도에는 상당한 측정오차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⁵⁾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생성한 납세의식 지표(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와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위험선호도)이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형을 도식화한 그림은 [그림 1]과 같다. 납세의식 지표 중 성실납세의향, 조세형평성, 사회규범 수준은 납세순응행위에 정(+)의 영향을

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신고자료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개인의 납세순응도에는 상당한 측정오차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문조사상의 과거 납세순응 경험은 실제보다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상 납세순응은 실제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현실의 납세순응은 설문조사상의 실제와 가상 납세순응 중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세형평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성실납세문화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양식으로 인지할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조세이해도가 납세순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세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오히려 법의 망을 피하여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악용될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1]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납세의식 지표 각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상 납세순응에 있어서는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제 납세순응에서는 성실납세의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납세의식 지표들과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에 따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실납세의향은 다른 어떤 지수들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납세의무를 행하던 납세자의 성실납세의향이 납세순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성실납세의향의 상대적 영향력은 실제 납세순응보다 가상 납세순응에서 월등히 크게 나

<표 6> 납세순응 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결과 1

		실제 납세순응	가상 납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의향	0.0512*** (0.0093)	0.4166*** (0.0259)
	조세이해도	0.0223** (0.0098)	0.0881** (0.0271)
	조세형평도	-0.0086 (0.0112)	0.0286 (0.0311)
	사회규범	0.0151 (0.0201)	-0.0248 (0.0559)
외생변수	소득	0.2329 (0.3270)	-0.1102 (0.9070)
	교육	-0.8895** (0.3758)	-1.3908 (1.0426)
	근로형태 (자영업자=1)	-4.9792*** (0.6841)	1.1417 (1.8977)
	배우자 (배우자 있음=1)	-0.3158 (0.6164)	2.0666 (1.7099)
	성별 (남성=1)	-0.4275 (0.5376)	7.1521*** (1.4911)
	연령	0.3570 (0.2586)	-0.2210 (0.7173)
	거주지역 (수도권=1)	-0.1057 (0.5000)	0.3592 (1.3870)
	위험선호도 (복권구입=1)	0.2895 (0.4127)	-3.6718** (1.1448)
	주택 (유주택자=1)	-0.9128* (0.5364)	-0.7693 (1.4880)
	종교 (유종교자=1)	-1.0270** (0.5013)	0.8744 (1.3907)
절편	94.1900** (1.8397)	2.5079 (5.1031)	
R-square (N=2,400)	0.0437	0.1285	

타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주관적인 의향이 실제보다 가상적인 상황에서 더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된다. 현실에서는 성실납세의향이 낮은 납세자가 탈세를 하고 싶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가상적인 상황에서

조세형평성과 사회규범이 성실납세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서의 모형에서 성실납세의향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 실제로는 성실납세의향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 사회규범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는 탈세에 따르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성실납세의향과 납세순응 간의 연결고리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조세이해도 또한 실제와 가상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규범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는 실제와 가상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에서는 조세형평도나 사회규범이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로 포함된 성실납세의향에 의해 그 영향력이 잠식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 조세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회규범이라 생각할수록 성실납세의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도나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이 성실납세의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세형평도나 사회규범이 성실납세의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종속변수를 납세순응이 아닌 성실납세의향으로 두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조세형평성과 사회규범은 성실납세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

이해도는 성실납세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세형평성과 사회규범이 성실납세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서의 모형에서 성실납세의향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 실제로는 성실납세의향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 사회규범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의향의 효과로 나타난 것 중에서 조세형평성과 사회규범에 의한 효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성실납세의향을 종속변수로 두고, 조세형평성과 사회규범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실제 성실납세의향과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성실납세의향의 예측치 간의 차이인 성실납세의향의 잔차($X_i - \hat{X}_i$)를 원래 모형의 성실납세의향 변수 대신 사용하였다. 이는 성실납세의향 중 조세형평성과 사회규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성실납세의향 잔차를 사용하여 원래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표 6>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는 실제 납세순응의 경우 사회규범이, 가상 납세순응의 경우 조세형평도와 사회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인다는 점이다. 조세형평도나 사회규범이 성실납세의향을 통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배제한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예상한 바와 같이 조세형평성이나 사회규범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의식 관련 지수 중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성실납세의향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한다는 믿음, 그리고 탈세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규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7〉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결과 2

		실제 납세순응	가상 납세순응
납세순응 관련지수	성실납세의향 ($X_i - \hat{X}_i$)	0.0512*** (0.0094)	0.4166*** (0.0259)
	조세이해도	0.0223** (0.0098)	0.0881*** (0.0271)
	조세형평도	0.0047 (0.0109)	0.1365*** (0.0303)
	사회규범	0.0397** (0.0199)	0.1755** (0.0552)
외생 변수	소득	0.2328 (0.3270)	-0.1102 (0.9070)
	교육	-0.8895** (0.3758)	-1.3908 (1.0426)
	자영업자	-4.9792*** (0.6841)	1.1417 (1.8977)
	배우자	-0.3158 (0.6165)	2.0666 (1.7099)
	성별	-0.4275 (0.5375)	7.1521*** (1.4912)
	연령	0.3570 (0.2586)	-0.2210 (0.7173)
	거주지역	-0.1057 (0.5000)	0.3592 (1.3871)
	위험선호도	0.2895 (0.4127)	-3.6718*** (1.1448)
	주택	-0.9128* (0.5364)	-0.7693 (1.4880)
	종교	-1.0270** (0.5013)	0.8744 (1.3907)
	절편	95.9533*** (1.7779)	16.855*** (4.9318)
R-square (N=2,400)	0.0437	0.1285	

IV. 맺음말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납

성실납세의향은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의 납세의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세의식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납세의식을 구성하는 요인 중 성실납세의향 지수는 평균 7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적 규범 지수는 평균 50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형평도 지수 중에는 수직적 형평성 지수가 평균 11점으로 현저히 낮았고, 교환의 형평성 지수는 평균 53점, 수평적 형평성 지수는 평균 7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납세의식 지표 중 성실납세의향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받아들이는 것 이든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든 개인의 성실납세의향이 납세순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한편, 성실납세의향은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의 납세의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회귀분석 결과는 납세 관련 사회적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형평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의 납세순응 여부 결정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탈세와 납세순응의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납세순응,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조세제도의 공정한 운영 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확률과 처벌수위가 낮을수록 납세자는 탈세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가치관을 내재화하게 되며, 이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정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람들이 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그 어떤 정책적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요인으로 든 것은 불성실납세자로 인해 성실납세자가 과도한 세부담을 진다는 것과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평과세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인식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의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세무조사 확대와 징벌수위 강화와 같은 처벌 위주의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선정비율과 벌과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현진권, 2005). 탈세행위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경제모형에서 가정하듯이 개인적 차원에서 탈세에서 오는 기대효용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규범 형성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기제라 생각

된다.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다른 납세자들도 발각될 확률이 낮으리라는 생각하에 성실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탈세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enzel(2005)은 “mispercieved social norm”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탈세행위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탈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재가 미약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확률과 처벌수위가 낮을수록 납세자는 탈세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가치관을 내재화하게 되며, 이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은 탈루소득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의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단순히 탈세행위에서 오는 기대효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납세의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구광희 외, 2010; OECD, 2010). 결국 중요한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부를 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의무로서 세금납부의 필연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조세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납세순응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의 형성과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명인사나 정치인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실제보다 탈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Wenzel, 2005). 탈세자는 국민 중 극히 소수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더라도 성실납세자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에 따라 언론보도는 성실납세자보다는 탈세자에 편중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보다 사회 전반에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왜곡된 인상을 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세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세정상 혜택과 기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⁶⁾ 현재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00만원 이상인 자로 주로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재 고액 납세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소액 또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구광희 · 박무현 · 김영락,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세회계연구』 제 34집, 2010, pp. 1~2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
 전승훈 · 김재진,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

방향」, 『제 3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2.
 현진권,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1(3), 2005, pp. 135~175.
 Cialdini, R.B., Reno, R.R., Kallgren, C.A.,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990, pp. 907~914.
 OECD, Information note: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axpayers’ compliance behavior,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2010.
 Reno, B., Cialdini, R.B., Kallgren, C.A., “The transsituational influence of social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993, pp. 104~112.
 Webley, P., Cole, M., Eidjar, O.P., “The prediction of self-reported and hypothetical tax evasion: Evidence from England, France and Norwa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2), 2001, pp. 141~155.
 Wenzel, M.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2), 2004, pp. 213~228.
 Wenzel, M. “Misperception of social norms about tax compliance: From theory to interven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6), 2005, pp. 862~883.

6)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유예),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를 포함한다. 기타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 금융상 우대(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등이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I. 문제 제기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경영평가연구팀장
(yjraa@kipf.re.kr)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 중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미국 고용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주요한 선거 쟁점이지만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은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여의치 않는 경제적 환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정책적 과제가 아닐 것이다. 핼코의 최고 투자책임자인 빌 그로스는 일자리 감소와 고령화가 선진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2.12.6). 특히 어느 국가든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정책과제가 될 것이고 그나마도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자의 요구가 상충하는 고용구조가 되리라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에 의한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중에는 일본처럼 프리터족¹⁾이나 니트족²⁾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어렵게 고용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양질의 정규직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면서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출되었으며, 개인적인 노후보장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실업구제 및 복지 재

1) 프리터(Freeter)란 자유롭다는 Free와 근로자라는 Arbeiter라는 독일어의 일본식 조어로서 1987년 학생아르바이트와 구분하여 사회인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시사용어사전 인용.

2)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은 취업의 의욕이 없이 주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집단으로 최근 들어 고학력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고정적인 직장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프리터와는 구별된다. 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정이 증가하는 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청년구직자의 신규 채용의 확대와 5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고용정책적 핵심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적 과제는 일면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대결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12년 대선 후보들은 청년층 신규 고용 확대와 정년연장이라는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³⁾ 특히 민간기업의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이나 정년연장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평균적인 임금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일률적인 청년고용 할당제의 적용이나 임금구조의 변화가 없는 정년연장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용과 인력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인력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현재도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는데 정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계속 고용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모든 국가가 직면한 사회·정책적 과제이다. 민간부문에서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를 동시에 늘리는 것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고용도 확대하고 고령층의 계속 및 연장고용도 확대할 수 있는 고용 및 인력정책 방안을 우리 사회보다 먼저 겪은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평균적인 임금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일률적인 청년고용 할당제의 적용이나 임금구조의 변화가 없는 정년연장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용과 인력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의 인력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고용정책의 연구경향과 관련 제도

1. 선행연구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연령층, 성별, 학력별 등 인적 구성,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장소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다양화(上林憲雄 외, 2010)라는 연구도 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김준영, 2011; 김용하·임성은, 2011; 김진태, 2012).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적자원과 고용형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임금체계나 임금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임금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류성민 외, 2008; 박성준 외, 2008; 정진호 외, 2011). 또한 제도적 연구로서 고령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대한 연구(박성준 외, 2009; 여용훈, 2008; 김진태, 2012)가 있고 청년고용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김영, 2011; 김영생, 2011, 이승렬, 2011; 박

3)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찰·소방관, 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공공부문의 통신보완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약속하고 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부담금 도입,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청년창업지원 등 청년일자리 확충을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제18대 대선공약집과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집 참조.

국가 고용정책의 변화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인력관리 정책과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에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재 외, 2012).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기업이나 정부의 고용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인력관리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방향이나 개별 조직적 차원에서 인구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인적자원관리 또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라는 분석과 연구들은 각기 시각과 차원을 달리하는데, 두 주제는 상호 연관성은 높은 연구 주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적 고용정책과 조직적 인력관리정책이 위계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고용정책의 변화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인력관리 정책과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에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Putnam(1995)이나 Fukuyama(1995)는 사회 구성원 간 네트워크, 협력과 신뢰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했는데, Selden(2009)은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조직이나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같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차원에서, 개별 조직 차원에서는 전략적 조직 및 인적관리를 추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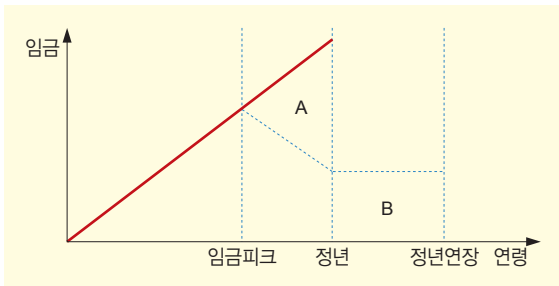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앞서서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속근로나 연장근로를 위한 정년연장이나 임금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10여 년 전부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제는 오랜 기간 경기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노사는 불가피하게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능력급 위주로 변화시키면서도 특히 50대 후반 근로자의 계속적 임금 상승을 지양한 바 있다. 이러한 임금 상승 억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정부나 기업에서는 종신고용의 관행이 일부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확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12).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또는 고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동결하는 방안으로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9).⁴⁾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기본급이 상승하는 호봉제의 문제를 일정 연령에서 삭감률을 적용하고 그 대신 고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장시켜 주는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경제위기

4)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이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이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바꾸지 않고 정년퇴직자를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2009 참조. 실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근무를 장려하려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이후 은행권이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과 같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에 성과평가, 연봉제, 성과급의 도입과 같은 성과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조직구성원이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서 [그림 I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소되는 임금분(A)을 정년연장으로 지급(B)토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림 II-1] 평생임금이 동일한 임금피크제



자료: 고진수, 『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6.

그러나 정진호 외(2011)의 연구에서 2006년 이후 정부는 제 보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도입률을 보면 2005년 2.3%에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 2009년 9.2%로 점차 높아지는 수준으로서 민간기업에서의 임금피크제의 확산은 제한적이고, 민간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정년은 있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적으로 53세로서 그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기는 어려운 고용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연공급의 임금체제로 인하여 연령대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의 시

조직구성원이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서 기존 정년까지의 총임금 한도 내에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고안한 제도가 임금피크제이다.

장에서 존속률이 그리 높지 않음으로 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년 보장이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말고 최근에 직면한 사회문제로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인구구성비에서 청년층이 적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사회적 문제는 청년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나마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비정규직과 같은 나쁜 고용형태의 일자리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고용정책이 된 지 오래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12.12.6). 원래 각국 정부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차별 해소와 적극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이공계 출신 등 청년채용을 할 때 할당 및 우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열린 고용 및 사회형평적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서 신규 고졸 및 청년채용을 확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⁵⁾은 23.1%로 OECD

5) OECD가 비교하는 청년층 고용률은 15~24세까지로서 우리나라 평균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이 27.3세인 점을 감안하면 15~24세의 동일한 연령대로 각 국가의 청년고용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조직의 원활한 신규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한편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업무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회원국 평균인 39.5%보다 16.4%포인트 낮으며, 스웨덴(40.4%), 독일(48.2%), 프랑스(29.91%), 미국(45.45%), 일본(39.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즉, 전반적인 고용률과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고용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30.09%에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약 7.04%포인트 하락하여, 현재 23.05%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은 44.64%에서 39.54%로 5.1%포인트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 주요국에서도 청년고용률이 10%포인트를 전후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특이한 것은 청년고용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1.96%이었던 청년고용률은 2011년 39.07%수준으로 2.8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프랑스는 29.31%에서 29.91%로 0.02%의 차이를 보이며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년고용률 자체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박한준 외, 2012).

〈표 II-1〉 한국·일본의 고용률 연도별 비교

(단위: %)

연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OECD	전체	67.34	68.36	68.89	69.03	67.29	67.30	67.52
	청년(A)	29.14	26.50	26.14	25.78	23.18	22.67	22.32
	청년(B)	44.64	43.19	43.17	42.79	39.90	39.48	39.54
한국	전체	65.38	68.03	68.33	68.22	67.38	67.71	68.43
	청년(A)	10.07	6.74	6.59	5.87	5.42	6.12	6.77
	청년(B)	30.09	27.18	25.68	23.80	22.90	23.00	23.05
일본	전체	74.35	76.04	77.14	77.45	76.94	77.56	77.33
	청년(A)	15.56	14.93	14.87	14.86	13.96	13.72	13.07
	청년(B)	41.96	41.40	41.43	41.37	39.89	39.16	39.07

주: 청년(A)는 15~19세, 청년(B)는 15~24세 기준
 자료: 박한준 외, 「고용정책 다변화와 인력관리」, 2012.

이러한 청년 고용과 관련한 고용정책 변화는 개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노동시장 및 인력구성의 다원화에 따른 기관 내 연령, 학력, 성별 등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다원적 인력관리(diversity management)가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유기체인 조직으로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청년·장년·고령층의 인적구성의 안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설립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인적구성이 고령화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원활한 신규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한편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업무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청년의무고용, 청년채용목표제와 같은 고용정책방안에 대한 국회 등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⁶⁾ 그래서 이를 해결할 고용정책으로서

6) 국회와 정부가 2004년 3월 청년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제정하였다. 그 당시 이 특별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기간이 연장됐다.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피크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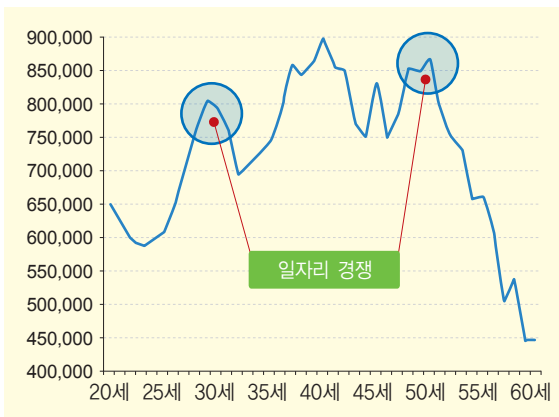
Ⅲ. 공공기관 인력구조 현황

1. 인력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을 보면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고령자가 상충되는 고용구조이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청년 구직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상황이고 50세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1950년대 출생한 부모 세대와 1980년대 출생한 자녀 세대간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으로서 향후 5~10년 간 일자리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나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10년 후에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청년층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Ⅲ-1] 연령별 인력 구조

(단위: 명)



자료: 고진수, 『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6

**복지재정의 직접 부담을 완화하려면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가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사례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것과 같이 고령자의
고용연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 Ⅲ-1]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는 특히 20대 초반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으며, 오히려 실업률은 높은 데 심각성이 있으며, 60대 이후 연령대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표 Ⅲ-1〉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고용률

(단위: %)

연령계층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경제활동참가율	52.1	74.7	74.8	76.0	79.3	80.9	77.3	70.1	58.1	33.1
실업률	9.3	5.6	3.1	2.7	1.9	1.7	1.8	2.6	3.0	1.4
고용률	47.2	70.5	72.5	73.9	77.8	79.5	75.9	68.3	56.4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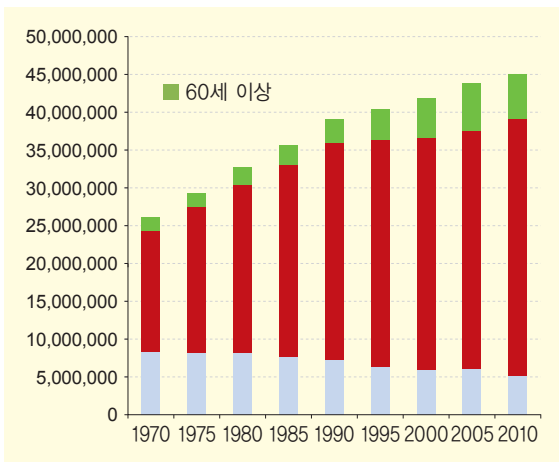
자료: 201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인구구조상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져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고령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는 복지재정의 직접 부담을 완화하려면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가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사례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것과 같이 고령자의 고용연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2008년 이후 선진화 과정에서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30대 초반 이하 직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2] 한국의 연도별 연령 구조

(단위: 명)



자료: 1970년~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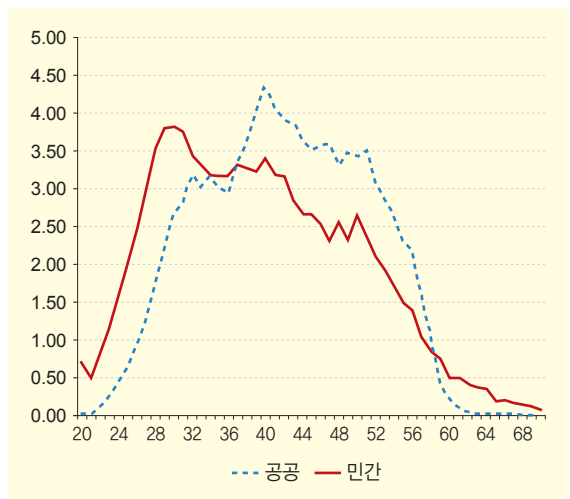
2. 공공기관 인력구조와 임금 현황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높아 고령화된 편이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민간과 비교하여 20대와 60대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이는 최근 신규 채용이 적었고 정년이 대부분 60세 이하인 것이 원인이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직원 비중이 높아서 공공기관에 비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규 채용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2008년 이후 선진화 과정에서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30대 초반 이하 직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⁷⁾ 또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평균연령은 3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설립된 지 오래된 기관의 평균연령이 높은 편이며 신설 기관의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다.

[그림 Ⅲ-3]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 근로자 연령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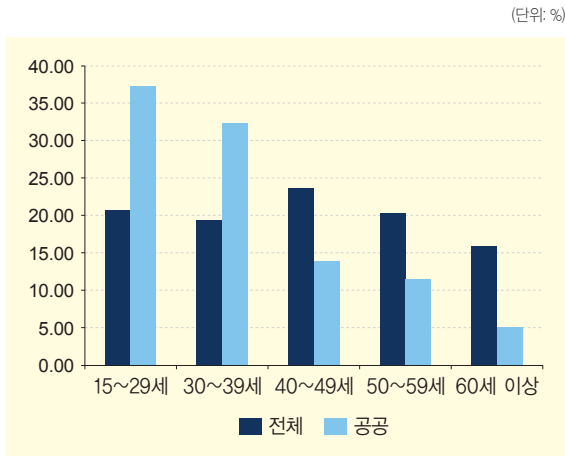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임금현황 조사」, 2011, 원자료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1, 원자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20대의 비중이 높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20.7%이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7%로 높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대의 비중은 19.40%이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38%로 높다.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40대와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2008. 12. 19.

50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Ⅲ-4] 전체 비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령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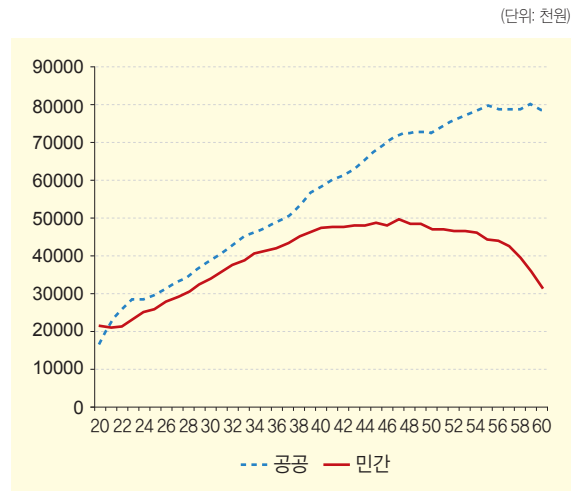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조사』, 2012
성재민·정성미, 『2011 K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1

[그림 Ⅲ-5]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40대와 50대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⁸⁾ 민간기업 근로자는 40대 이후 중소기업 재취업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임금상승이 어려우며, 50세 이상이 되면 대기업 종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력구조여서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구조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근접한 임금구조이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차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이 정년을 연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원의 고용안정, 고령인력의 활용, 직원의 만족도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5] 연령대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임금현황 조사』, 2011, 원자료
노동부, 『고령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1, 원자료

공공기관은 모든 직원의 정년이 동일한 경우와 직급별, 직군별 다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정년이 연장되면서 동일 정년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정년을 연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원의 고용안정, 고령인력의 활용, 직원의 만족도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영재 외, 2012).

8) 공공기관의 임금이 민간보다 높은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98년 이후 경영효율화 계획에 의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아웃소싱 하였고 때문이기도 하다.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인적자원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어서 신규채용의 확대와
정년 연장 요구를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를 활용할 수 있다.**

〈표 Ⅲ-2〉 정년 연장 시기별 분포

	전직원 연장	직급별 차등 연장	직군별 차등 연장
2007년 이전	11	11	0
2008년	5	3	1
2009년	2	5	6
2010년	5	4	2
2011년	3	10	6
2012년	3	5	2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조사』, 2012

공공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유형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총 52개 공공기관 중에서 정년보장형이 35개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형이 13개, 고용연장형이 7개 순이다. 이들 중에서 정년보장과 고용연장을 동시에 시행하는 기관이 2개, 정년보장과 정년연장을 동시에 시행하는 기관이 1개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가 많은 반면에 민간기업에서는 정년연장형이 35.4%이고 재고용형이 35.6%, 정년보장형이 27.1%로 정년보장형보다는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형이 더 많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에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명예퇴직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결과, 2011년 참조)

〈표 Ⅲ-3〉 임금피크제 유형별 도입 현황

(단위: 개, 명)

임금피크제 유형	기관	대상자	기관별 평균 인원
정년보장형	35	1,882	53
정년연장형	13	1,863	143
고용연장형	7	7	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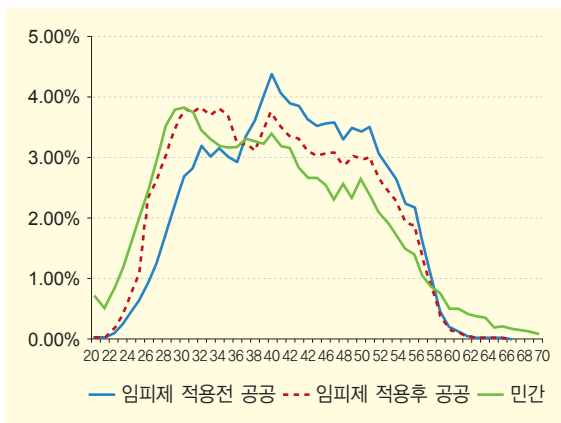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도입한 이유가 인건비 절감,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령인력 활용보다는 신규 채용 확대라는 응답이 많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확대보다는 고령인력을 활용하려는 사유가 많았다(라영재, 2012).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인적자원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어서 신규채용의 확대와 정년 연장 요구를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를 활용할 수 있다.⁹⁾ 여러 가지 임금피크제 유형이 있지만 개별 공공기관의 인적 구성비,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단 [그림 Ⅱ-1]과 같이 1단계로 근로자의 총임금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설계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및 직무의 개발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수용도 및 공공기관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절약된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 민간기업보다 20~30대 연령대 청년층 비중이 적었던 인적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의 증가로 조직 순환 및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존 50세 이상 근로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나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령화 대책에 반하지 않는

9)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및 고용연장형 등 유형, 임금피크연령, 임금삭감률 등에 의하여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신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정년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신규 창출 인력수와 정년연장 인력 수를 추정해 보면 [그림 Ⅲ-6]과 같이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0여 년 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일정 연령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되어야 하고, 아니면 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종의 Pay-band와 같은 임금구간을 설정하는 능력급 임금체계의로의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노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보인다.

[그림 Ⅲ-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후 연령별 비중의 변화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임금현황 조사』, 2011, 원자료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1, 원자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고령층에서 민간기업

장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노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보인다.

에 비하여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5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민간기업보다 낮아지므로 임금체계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공기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60세인 공무원 정년 연장과 같이 임금의 감축이 없는 정년 연장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은 공무원의 평균 임금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수혜 금액이 높아서 평생소득으로 비교하면 높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든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의 결정은 공공부문의 노동 및 임금생산성 측정이 용이치 않음에 따라 공무원 임금수준과 공공기관의 업종, 분야가 유사한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평균 퇴직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¹¹⁾

IV. 결론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의 경


10)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단순히 평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학력, 경력, 근속기간의 개인적 요인이나 비교대상 민간기업 산업적 유형이나 규모 등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11) 일본의 경우에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은 공무원과 같거나 약간 높은 편이고 독일, 프랑스 공기업의 임금수준은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무원과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라영재(2012), 독일의 DB, GfA, 프랑스의 SNCF, EDF, 일본의 정책금융공고, JETRO, 노동연구원수기구 출장 보고서 참조.

**일본과 같이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임금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에도 최근 재정위기와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층의 고용촉진과 고령자의 고용을 계속, 연장근무가 가능한 고용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 전 경제위기에서 연공급의 임금형태를 가진 임금체계를 55세부터 60세 정년까지 기본급 상승을 정지시키는 노사간 사회적 타협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령자의 임금부담을 완화한 상태에서 최근 65세로 계속,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나서고 있다. 프랑스, 독일의 공공기관은 신규 사업의 발굴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청년 정규직 채용 및 고령자의 계속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직무 특성에 따라 차별 정년제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국식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역량급, 집단적 성과급제를 통해서 연공급에 의한 임금인상의 억제 및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정년퇴직 이후 가장 큰 문제가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경제적 문제라고 한다.

앞으로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이나 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고령화 문제는 국가 재정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직의 인력관리 차원에서는 인적 구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계속해야 한다. 즉, 지속적이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전체가 정원의 3% 신규 채용목표라는 정책적 고용목표를 충족하면서 개별 공공기관은 자연퇴

직률 등 인력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의 정년까지 임금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 정년만을 연장한다면 '신의 직장'을 더 강화한다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실제 총인건비 상승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임금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채용의무제, 정년연장 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요소, 인력의 합리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사례집』, 한국노동연구원 고
성과작업장혁신센터, 2009.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1.
고진수, 『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보도자료,
2008. 12. 19
김경휘, 「정규직 청년근로자의 고용특성 및 정규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2009,
pp.25~57.
김미숙, 「일본의 니트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
찰」,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2009,
pp. 173~199.
김성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76,

- 2012.08.14.
- 김 영, 「녹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취업상황—경기 회복기의 도교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2011, pp. 121~153.
- 김영생, 「청년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기업에 대한 기업 평가모형의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4호, 2011, pp. 22~41.
- 김용하, 임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2011, pp. 36~59.
- 김장기, 「공단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개발 방안: 직원의견조사를 중심으로」, 『노동보험포럼』, 제1권 창간호 통권 제1호, 2008.
- 김준영, 「고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4권 제1호, 2011, pp. 71~101.
- 김진태,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남재량, 「고졸 NEET와 대졸 NEET」, 『월간노동리뷰』, 4월호, 2012, pp. 39~54.
- 라영재 · 문창오 · 이우정,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미발간, 2010.
- 라영재 · 문창오 · 김효경,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시스템에 관한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미발간, 2011.
- 라영재 · 문창오 · 백주혜, 『공공기관 임금현황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미발간, 2011.
- 라영재, 『일본 및 독일, 프랑스 공공기관 출장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미발간, 2012.
- 류성민 · 노용진 · 이영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임금체계』, 한국노동연구원, 2008.
-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대선공약집.
- 박성재 · 반정호,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8권 제1호, 2012, pp. 163~190.
- 박성준 · 김기승,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2008, pp. 85~100.
- 박정호,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1월호, 2010, pp. 53~64.
-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성경재 · 정성미, 「2011년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여용훈,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피크제 인식과 조직 유효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상호, 이상현,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7권 제3호, 2011, pp. 131~166.
- 이승렬, 「일본 청년고용대책의 시사점」,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5월호, 2011, pp. 31~41.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0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2010.
- 정진호 · 김정한 · 김동배 · 이인재,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최흥기,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최근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21집, 2011, pp. 151~188
- 홍영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96,

2012.08.01.

上林憲雄 외, 『人的資本管理』, 2010.

梅澤眞一 외, 「高齡者雇用の現想と課題」,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2.

Fukuyama Francis,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1995.

Helliwell, John and Putnam, Robert.,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in Italy,” *Eastern Economic Journal*, Vol. 21, No. 3, 1994, pp. 295~307.

Selden, Sally Coleman., “Human Capital : Tools and Strategies for the Public Sector,” CQ Press, 2008.

정책토론투리포트

■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 본 원고는 2012년 11월 27일(화) 코엑스 컨벤션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된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 일 시 2012년 11월 27일(화) 13:30~17:50
- 장 소 코엑스 컨벤션 컨퍼런스룸(남) 317호
- 진행순서
 - 13:30~14:00 등록
 - 14:05~14:20 개회사
 - 개회사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30~16:00 제1세션(317호)
 - 사 회 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 I-1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도 추정
 - 발 표 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토 론 자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 I-2 근로유형간 사회보험 및 노후소득보장 격차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 발 표 자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 김동준 한국개발연구원
 - 토 론 자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4:30~16:00 제2세션(317호)
 - 사 회 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 II-1 소득빈곤과 자산빈곤과의 연계성 분석
 - 발 표 자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 토 론 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I-2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특성 분석
 - 발 표 자 김경현 한국조세연구원
 - 토 론 자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 II-3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 발 표 자 석상훈 기획재정부 사무관
 - 김현수 국민연금연구원
 - 토 론 자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6:00~16:20 중간 휴식
 - 16:20~17:50 제3세션(317호)
 - 사 회 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 III-1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 특성과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 표 자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현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 론 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III-2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지위변화 유형 분석
 - 발 표 자 오지연 한국조세연구원
 - 토 론 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 III-3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 발 표 자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토 론 자 고 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16:20~16:50 제4세션(317호)
 - 사 회 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 IV-1 Consumer Choice of Durable Goods : The Case of Expenditure on Passenger Cars in Korea
 - 발 표 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토 론 자 전병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IV-2 수입차 선택 모형에 관한 연구
 - 발 표 자 윤형훈 서울연구원
 - 토 론 자 김지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IV-3 개인연금가입 결정요인 분석
 - 발 표 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 토 론 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 17:00 폐회

(가나다 순)

I-1 주제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도 추정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반면,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소득수준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이한 세부담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 후, 실효세율의 조건부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국지적 지표를 비모수적 계량경제 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논문에서 개발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조사의 소득세 증빙자료가 이용되었다.

2007~2010년 기간의 소득세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3,000만원 중반부터 4,000만원 사이의 소득구간에서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실효세율의 개인 간 차이는 소득공제제도의 활용도 차이와 관련이 깊다. 소득세 실효세율과 소득공제율의 조건부 변동계수 간 회귀분석 결과,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 그리고 장기주식형저축공제의 경우에 공제 활용도의 개인적 차이가 세부담의 수평적 불평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개인 간 소득공제율의 상대적 차이와 소득세 부담의 수평적 불평등도 간에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수평적 형평성, 결과의 평등만을 의미해서는 안 돼

이영환/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 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흔히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조세부담의 크기 자체보다는 오히려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납세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거나, 자기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또한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공평의 개념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뉘어진다. 수평적 공평이란 같은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공평이란 부담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는 납세자들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여 부담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는 부담능력이 큰 사람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조세 부담을 부과할 것인지 즉, 세율체계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발표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수직적 형평성 즉, 세율체계의 설정과 관련한 논문은 비교적 많이 나와 있지만,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논문의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평적 형평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 발표논문은 근로소득자 간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귀중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같은 소득구간 내에서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각종 공제제도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형평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제제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논문에서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이 같으면 세부담도 같아야만 공평한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정도를 동일한 소득구간 내에서 실효세율이 평균 혹은 중간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같더라도 가족의 구성원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경비 공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천만~4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즉, 세부담이 불평등하기 때문이 아닌데, 불평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각종 공제의 변동계수가 커지는데도 실효세율의 변동계수가 낮아지는 것이 불평등을 낮추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각종 공제의 변동계수가 커질 때, 실효세율의 변동계수가 높아지는 항목, 예를 들면 보험료 공제 등을 수평적 불평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 항목의 소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실효세율의 변동계수를 작게 만든다면, 그 공제항목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이나 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별 활용률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공제항목의 변동계수가 클수록 실효세율의 변화가 크다면, 동 공제항목의 인센티브 기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수평적 형평성이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평성이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1) 쓴 만큼 혜택을 받거나, 2) 필요경비가 많으면 필요경비를 많이 공제받는 것이 더 형평할 수 있다.

1-2 주제

근로유형간 사회보험 및 노후소득 보장 격차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준/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2차~4차(2008~2010년 기준)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첫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격차를 비교분석하고, 둘째, 근로유형, 인구학적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패널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이 사회보험 및 공·사적연금 가입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횡단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유형별 가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근로유형의 격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에 취약한 계층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근로계층의 사회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취약성은 근로유형의 격차가 사회보험 및 공·사적연금 가입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처럼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어려운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토론 요약

보다 진척된 연구주제 발굴과 문제 접근방식 요구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문(근로유형간 사회보험 및 노후소득보장 격차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은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후소득보장수준 실태를 보여주고, 이러한 차이가 유발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발제자는 근로유형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자, 사업주, 무급종사자로 구분한 후 각 근로유형별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을 파악하고, 가입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근로유형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후소득보장 대비 수준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도 있다.

1. 연구주제의 심화 필요

근로유형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차이가 있고,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노후소득보장 대비 수준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논의된 바가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 자체를 밝히는 연구는 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으며, 보다 진척된 연구주제 발굴과 문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그 한 예로서 동일한 상용직 내에서 유형2와 유형4로 갈라지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분석방법은 Logit 분석기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부문의 정비

선행연구를 다룬 부문에서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아 이 부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본문 4~5페이지의 성과 격차 분석은 본 연구주제와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7페이지 이하에서도 주제와 무관한 선행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단순히 기존연구를 단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보다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실증분석방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모형에는 패널자료가 가지는 자기상관의 문제를 제거하는 제2의 error term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제문에서는 단년도 자료를 분석한 기술통계만 제시되고 있는데 다년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효과분석을 할 경우에는 제2의 error term이 가미된 분석모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분석 결과 제시방법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 2>의 경우 종적인 합 100%보다 횡적인 합에 대한 각 cell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된다. 사소한 지적이지만 <표 4>에 제시된 연령의 경우 최소값이 1인 것은 전체적 맥락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치이다. 분석상의 오류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II-1 주제

소득빈곤과 자산빈곤과의 연계성 분석

임병인/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 2~4차년도 자료로서 소득 유형별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을 제시한 뒤, 소득 빈곤가구를 다시 자산빈곤 여부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특성을 살펴보고, 프로빗 및 다항로직모형을 이용하여 소득 및 자산빈곤 결정요인 등을 추정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분석대상 기간 동안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모두 하락하고 있다. 둘째, 소득빈곤가구이지만 자산비빈곤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소득빈곤이면서 자산빈곤인 가구와 비교한 결과, 후자의 소득이 낮고 부채는 더 많아 소득빈곤층의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빈곤으로 떨어지기 전에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셋째, 소득빈곤이면서 자산비빈곤가구의 순자산은 모두 양(+)임에 반해 자산빈곤가구는 음(-)으로 나타나 빈곤상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소득빈곤가구를 자산빈곤과 자산비빈곤가구로 구분하여 가구주 특성 차이를 본 결과, 여성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고연령 가구, 저학력,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수록 소득빈곤이면서 자산빈곤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 컸다. 다섯째, 유형별 소득기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가구주일수록, 가구내 취업자가 많을수록,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주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가구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섯째, 빈곤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 추정결과,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비빈곤인 가구와 비교할 때, 가구주 학력수준이 높으면,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소득빈곤 또는 소득 및 자산빈곤일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근로자일 경우 소득빈곤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데 반해, 소득 및 자산빈곤일 가능성은 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직업이 불안정 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소득빈곤과 소득 및 자산빈곤가구가 모두 비빈곤인 가구와의 차이가 연도와 무관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소득 및 자산빈곤 함께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최근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소득 및 자산빈곤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며, 좋은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기존 연구들의 경우 소득이면 소득, 자산이면 자산을 별도로 분석하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 토론자 역시 다른 연구의 한 부분으로 소득 및 자산빈곤을 분석한 바는 있지만 본 논문과 같이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가구나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빈곤의 문제를 소득과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 논문은 크게 보면 소득빈곤을 먼저 측정하고 이후 소득빈곤 속에서 자산빈곤과 비빈곤을 함께 다루

고 있다(표 4). 본문의 <표 4>는 소득과 자산에 있어 빈곤 및 비빈곤에 대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 분석 중 하나로 사료된다. 표에서 보면 생활이 가장 어려운 계층은 소득이 빈곤하면서 자산도 빈곤한 경우로 총소득 기준 2010년 8.25%의 가구로 보인다. 소득이 빈곤하면서 자산이 비빈곤한 경우는 2010년 총소득기준 8.56%, 소득은 비빈곤이지만 자산빈곤은 동일기준으로 20.6%이다. 이를 통해 보면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있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경우가 우선되며 다음으로는 현재까지의 정부기조는 소득빈곤층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면 소득은 비빈곤이지만 자산이 빈곤한 경우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만약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과도한 부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이들 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표 7-9>를 보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고, 무직인 사람들이 소득 및 자산에서 빈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노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이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 중 궁금한 점은 자료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본문 12페이지에서 소득 및 자산 비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소득 및 자산이 모두 빈곤한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추세로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순자산으로 계산한 자산빈곤의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추세와 다르다는 느낌이다.

두 번째로, 재정패널에서 산출하는 빈곤율과 통계청 및 다른 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빈곤율이 방향성에서는 비슷하지만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소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중치를 통해 조정이 되었다면 통계청의 결과와는 비슷하게 나와야 함에도 빈곤율이 높게 산출되고 있다.

세 번째로, 소득유형별 빈곤 결정요인에서 한 가지 특이점은 여성가구주일수록 소득 및 자산빈곤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여성가구의 빈곤율은 남성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해 자산 측면에서도 남성가구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여성가구가 빈곤에 놓일 확률이 낮다는 점은 선뜻 판정하기가 어렵다. 분석에도 있듯이 혹 여성가구주이더라도 학력이 높고, 일자리가 좋은 여성들이 많이 표집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현재 추세는 고령화되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I-2 주제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특성 분석**

김경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 가정을 갖는 동태적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effects Panel Probit Model)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구 중 과거 채무위험상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채무위험상태의 연령 프로파일 결과와 연령 교차항 상태의존성의 결과에서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험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채무위험상태를 경험했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 1.9배 정도로 위험상태가 지속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고령층에서 가계 채무 문제가 한 번 발생할 경우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매우 힘든 계층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가계 채무상태 악화의 지속성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층 가계의 채무 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요약
채무위험 고착화의 결정요인 등 연구도 주요 과제

김영일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의 논점은 고(신용)위험 부채가구의 채무위험 지속성에 대한 평가이다. 결론은 고위험에서의 고착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고위험 부채가구의 채무위험 지속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석방법상 주요 특징은 고신용위험의 정의를 원금상환여력과 순자산이 모두 음(-)인 경우를 채무위험상태로 정의하였다는 점이다. 분석모형에서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시계열이 4개년도로 동태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문 신용위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에서 유량적(flow) 신용위험지표에서 현금유동성여력(FM/Y)은 평균소비성향(APC=C/Y)과 부채상환비율(DSR: Debt Service to Income Ratio=DS/Y)로 구성되며, 논문의 대출이자 지급액과 DS(Debt Service)는 다른 정의이다. 저량적(stock) 신용위험지표는 순자산여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불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현금유동성여력과 순자산여력이 모두 음(-)일 경우 채무이행이 어려워지며, 구성요인이 증가할 경우 신용위험(PD)이 상승하게 된다. 논문에서는 과거의 신용위험(PD_{t-1})도 현재의 신용위험(PD_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상에 재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점을 우회하기 위하여, 평균소비성향, 부채상환비율, 자산 대비 부채를 대용지표로 활용하여 채무위험가구를 식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한된 형태의 신용위험

함수에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변형된 신용위험모형에서 가구특성 지표는 평균소비성향, 부채상환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의 변화를 중간경로로 하여 가계 채무 부담에 영향을 평가하였다.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과 부채상환비율의 분포와 가계부문 현금흐름에 대한 시사점은 부채상환비율이 낮더라도 평균소비성향이 높을 경우 현금유동성상의 지불여력이 취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부채상환을 위한 현금여력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현금흐름상의 지불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비성향과 부채상환비율을 함께 고려한 현금유동성여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논문에서 원금상환여력을 현금유동성여력의 대안지표로 사용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현금유동성여력과 순자산의 분포와 고신용위험 가구의 규모에 대한 시사점은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현금유동성여력이 음(-)인 부채가구의 비율과 순자산이 음(-)인 부채가구의 비율은 각각 약 6%, 약 20% 정도로 나타나며, 논문에서는 두 지표가 모두 음(-)인 경우를 추가적인 제약으로 사용하여 채무위험가구를 정의하였다.


논문에서 주장한 고위험 신용상태의 지속성은 해외 사례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고위험 신용상태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채무위험 고착화의 주요 결정요인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중요한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부문 신용위험의 미시적인 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에 채무위험 관련 문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채무상환 여부 또는 채무상환부담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문 채무위험을 유럽 등의 국가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을 추정하는 등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연구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II-3 주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석상훈 /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현수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 1~4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그 효과는 고령자 가구만을 분석하였을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는 기초노령연금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공적이전지출이 수혜자나 수혜자 가구의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제도 설계 및 정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토론 요약**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분석에만 집중된 연구는 문제

김수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논문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라는 고전적 연구 주제는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하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라고 사료

된다. 최근 국내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자료의 구축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몇 가지 점들을 짚고자 한다.

첫째, 관련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본 논문의 가장 큰 발견점은 ‘공적이전소득’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분석할 때와는 달리, 제도 간에 사적이전소득과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간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차별적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서론의 문제제기, 이론적 논의, 선행 연구 검토, 가설 설정 등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적인 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명확히 차별화되는 발견에 비해 날이 서지 않은 전반부 서술로 인해 다소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 읽히는 것은 아쉽다. 또한 결론의 서술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한다는 가설을 재검증한 것으로 요약하는 것은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에 비춰볼 때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이하 기초생보) 간의 사적이전소득 구축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지만, 왜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는 제반 제도적 설계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이다. 기초생보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부양의무자(직계 존속의 사적이전 제공자)가 있을 경우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급여수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적

이전소득이 반영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도 언급하고 있다-8쪽).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혹은 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제공되며, 사적이전소득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초생보는 원천적으로 사적 부양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양제도인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좀더 보편적인 대상(노인의 70%)에게 소득을 보충해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사적이전과는 거의 무관하게 제도의 목적과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제도적 차이는 급여수준의 차이일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약 9만 6천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기초생보는 최저생계비 수준(2012년 1인가구 기준 약 553천원)까지 보충해주는 제도로서 급여수준이 (가구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탐색적으로 밝혀낸 사실이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가설 수준의 발견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결과로부터 의미있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도 '왜 제도마다 효과가 다른가?'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여진다.

셋째, 분석모형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고령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8~10쪽),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구분이 무의미해보인다. 또한 고령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고령자가구 여부와 공적이전소득의 수급 여부에 대한 교호항(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것은 오류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 근원적 회

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의 관계'는 사회정책의 고전적인 주제로서, 이를 밝히고자 하는 학술적·정책적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본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어떠한가'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서론에 지적했듯이, 사회적 변화는 사적부양의식의 감소 및 공적부양욕구 증가를 야기했고, 이에 최근 한국의 1인당 복지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거시적·시계열적 관점에서 보면 사적부양의 감소가 공적부양 증가를 가져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막상 공·사이전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사적이전소득 감소의 공적이전소득 증가효과'에 주목하기보다는 미시적·횡단적 관점에서 공적부양 증가로 인한 사적부양의 약화, 즉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라는 차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적 현상은 사적부양의식 약화로 인한 공적부양 증가로 해석하면서도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분석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관련 연구 경향과, 본 연구 서론부분의 논리 전개에 대해 근원적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인다.

III-1 주제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 특성과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선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현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본 연구는 기부 관련 정책의 변화와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베이비부머의 기부 특성·의미를 논의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가구의 연간 평균 기부금은 16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16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베이비부머일수록 기부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연간소득, 학력, 임금 근로자 여부, 성별(여성)이 기부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해당 집단의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기부정책이 기부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원화, 맞춤형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토론 요약

종교적 기부와 세속적 기부를 구분하여 모형 설정해야

강철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기부와 베이비부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의 관련성

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문제 제기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한 배경적 논의 및 기술적 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모형 및 측정과 관련한 문제를 갖는다.

첫째, 종속변수가 기부금인데, 이럴 경우 독립변수 중 소득에 의한 설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기부금의 절대적 규모가 필요하다면, 이와 함께 philanthropic effort 등의 상대적 규모를 설정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높다. 즉,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의 규모 등을 설정하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의 기부비율이 진정으로 더 큰지 어떤지 등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너무 단순한 측정을 사용하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기부금의 측정과 관련해서 종교적 기부와 세속적 기부(자선적 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제한적 접근이다. 종교적인 기부에 베이비부머의 영향력이 크다고 나오면 해석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체 기부, 종교적 기부, 세속적 기부 등의 구체화된 측정을 사용해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분석방법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는 시간불변변수이다. 이런 변수는 고정효과분석을 하면 자동으로 분석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고정효과는 within-variation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Hausman test를 통해서 random-effect model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고정효과를 사용했을 때는 핵심변수인 베이비부머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두 가지 모형 모두에 의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는 random-effect model에 기초해서 결과를 해석한다. 이는 매우 자의

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논리에 의해서 모형의 선택에 대한 rationale을 갖든, 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선택(예:Hasusman-Taylor Model)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분석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분석 자료를 사용할 때 전체 자료를 베이비부머 기준으로 잘라서 이에 관해서 분석하면서 다른 그룹과 비교하는 접근 혹은 소득 등을 조절변수로 설정해서 베이비부머와 기부의 관계를 검증하는 접근 등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있어서 변수 측정의 선후관계의 점검이 필요하다. 보통 기부금에 대한 측정은 이전 연도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분석을 할 경우, 독립변수의 측정 시기가 기부 이후의 것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로, 직업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연구결과의 점검이 필요하다.

Ⅲ-2 주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 분석

오지연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1차 ~ 4차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이루어진 베이비붐 세대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재정패널조사의 활용방법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2)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방법은 집단중심추세 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방법과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방법이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사건 중심의 분석이 아닌 사건배열식 분석법으로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전체적인 경로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경활지속형', '실업탈출형', '자영업 I형', '자영업 II형', '임금근로이탈형', '임금근로지속형'의 6가지 유형으로 노동시장 지위변화 패턴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들 유형은 연령,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직업유무, 교육년수, 가구원수, 주택거주형태, 거주지역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가구주인 경우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고, 주택거주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의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토론 요약

각 유형별 시간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 변화양태 구체적 제시 필요

최옥금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을 살펴본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며, 주제에 적절한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갖는다.

먼저 유형 분류 및 특성 관련된 사항이다. 첫째, 본 논문의 목적은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각 유형의 특성을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시간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록>의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령자 은퇴과정의 특징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상용직이었다가 임시일용직으로 전환, 전일제였다가 시간제로 전환, 임금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도 임금근로지속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형의 특성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유형별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임금, 직·산업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연구 대상 선정 관련과 관련된 논의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노동시장 지위 변화라는 연구의 목적과 연관시켜 볼 때 1차년도에 취업자였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

는지 살펴보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취업자에서 비경활로 전환된 유형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비경활지속형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자료의 제약이 있다.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논문이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한다면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II-3 주제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박상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담배 관련 소비세의 단순종량세 세율체계에 연동제 도입 여부 및 연동제 도입 시 바람직한 연동지수의 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분석과 모의실험을 병행하여 단순 종량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지수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소득·가격탄력성을 차별화하여 물가연동제 도입 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CPI를 연동지수로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실효과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시계열적인 소득효과를 중화시키지 못하여 담배소비 억제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소득증가율에 연동한 경우에도 소득효과를 충분히 중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 억제 정책의 모범국가로 손꼽히는 영국에서처럼, 경상소득증가율에 추가하여 연간 3~5%p의 소비억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담배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 하락효과는 물론이고 소득효과까지도 함께 중화시켜줄 수 있도록 가산율 제도를 가미한 지수의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산율이 가미된 연동제 도입 시 전체적으로는 담배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소득계층별로는 그 효과가 다소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론 요약

담배소비세가 물가연동제 분석을 위한 타당한 대상인지 의문

고선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담배소비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효과를 4가지 지수별로 모의 실험하여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상소득증가율에 가산율 추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갖는다. 첫째, 담배소비세가 물가연동제 분석을 위한 타당한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가연동제는 종량세 부담이 물가 변동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분석기간 동안 담배의 (명목)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의실험에서는 물가연동제 도입이 (명목가격 상승을 통해) 담배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연동제 도입이 갖는 취지와는 불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가연동제 분석을 위해서라면 유류세 등 가격변동이 관찰되는 재화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 수단의 분석이라면 물가연동제와는 별개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둘째, 담배의 명목가격은 불변하였으나 분석 기간 동안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은 변화하였다. 그러나 모형에서는 상대가격 체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실질가격 변화에 대한 반영이 없다. 상대가격 체계가 변화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물가연동제가 설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모의실험에서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권장재화로서의 담배 소비를 줄이는 정책목표의 설계는 타당하나 담배 지출액으로 관측되는 소득효과와 소비효과는 서로

다르다. 즉 소득 증가 시 흡연량 증가보다는 고가의 담배소비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가격 상승 시 저가의 담배 구입보다는 흡연량 감소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양과 질 사이의 교환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효과가 과장되고, 담배소비효과를 과소 추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물가연동제 도입 취지인 세부담 왜곡의 완화 효과와 관련하여 소득분위별 분석을 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에 대한 중량세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때에 실제 세부담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결과를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 된다.

IV-1 주제

**Consumer Choice of Durable Goods:
The Case of Expenditure on Passenger Cars in Korea**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his paper analyzes the demand structure of expensive durable goods by estimating expenditure and reservation price equations separately, where the latter is subjectively determined by consumers but is not observable by the researcher. Manufacturers and sellers offer a stream of price of durable products, which are differentiated by quality or option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argeted consumers. Unlike inexpensive, frequently consumed nondurable necessity goods, an expensive durable good is consumed at the expense of the foregone consumption of other goods and services or saving. Thi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reservation price, which reflects the minimum net opportunity cost subjectively determined by the consumer. A consumer accepts a price offer of a durable good when the worth specified by the price stream exceeds the opportunity cost, and the price is realized as expenditure. However, the reservation price is not observed. This paper develops estimation methods under a censored regression model with latent floating censoring threshold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two-stage estimation, and estimates the parameter of

interest of both equations separately by applying these to the case of passenger cars in Korea. The asymptotic distribution of the estimates of expenditure and opportunity cost equations is derived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that is, in the empirical part, the expenditure and opportunity cost equations for purchasing a passenger car in Korea are estimated. The expenditure increases with net wealth and income, while the opportunity cost decreases with income; however it increases with squared income and the number of owned cars. The number of cars owned by the consumers turns out to increase opportunity cost sharply, and, thus is likely to decrease expenditure on a passenger car. Other factor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ssenger car expenditure such as household type (labor, self-employed, etc.), household size,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the age and gender of the household head, and etc. A fur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opportunity cos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come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its square; it generally decreases with income but eventually increases beyond a certain level of extremely high income. This implies that even a very rich person (household) would not demand an additional car, despite additional income, because the utility is already saturated and there are physical constraints against further consumption.



토론 요약

구매 결정 과정의 구체적 분석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전병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본 논문은 고가내구재인 자동차의 소비 결정 과정에 대해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실증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 강조되어 왔던 구매 결정 과정을 구체적인 두 가지 요소로 분해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에 대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구매 결정 과정에 있어 intended expenditure와 opportunity cost로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는 흥미로우나 추상적인 자동차 구매 결정 과정을 또 다른 두 가지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분해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효용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논문에서 사용한 intended expenditure보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는 willingness to pay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료를 통해 관측되는 것은 한계에서의 willingness to pay만이 관측되기 때문에 이 개념의 양립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case 1) $X_{1i} = X_{2i}$ and $Cov(u_{1i}, u_{2i}) = 0$ (case 2) exclusion restriction라는 두 가지의 식별조건 아래서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2번째 식별조건이 없는 경우 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서만 비례적 수준에 대한 식별 결과로부터 절대적 수준에 대한 식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Cov(u_{1i}, u_{2i}) = 0$ 에 대해 0 이외의 다른 값을 가정하거나, 혹은 β_1 또는 β_2 의 특정한 성분에 대해 제약을 가정하는 경우 (case 2) 역시 식별 요건 충족된다.

$Cov(u_{1i}, u_{2i})=0$ 이라는 특정한 제약이 암시하는 다른 의미가 없다면, 이 요건은 설명을 위한 자의적 제약일 수밖에 없다. 셋째, intended expenditure와 opportunity cost라는 추상적 개념 간의 구분의 어려움 때문에 각각의 식에 포함되는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내구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자동차의 수명 역시 구매결정 과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두 추정결과는 공통적으로 intended expenditure 식의 교란항의 변화가 opportunity cost 식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작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약 조건 아래서는 구매결정의 편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란 제약 아래 두 추정치 및 각각의 표준편차에 대해 일관성 없는 추정결과가 얻어졌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제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V-2 주제

수입차 선택 모형에 관한 연구

윤형호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9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한 1만 2,123대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말 누적 판매된 수입차의 점유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 같은 수입차의 점유율 증가는 디자인, 기능, 연비, 차량용도 등에서 국산 승용차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고객에게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차 선호현상과 판매가 증가한 상황에서 어떠한 개인들이 국산차 대신에 수입차를 구매하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수입차 구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산차 가운데 가장 2,500cc가 넘는 준대형차 차종과 수입차 가운데 가격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로짓 모형 분석에 의하면 2~3인 가구와 가구주가 30대, 전문대 이상 고학력,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고소득 가구, 차량 연료비가 많은 가구가 수입차를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차량운행이 많은 계층이 수입차의 디자인, 기능, 용도로부터 개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택형태와 거주형태, 그리고 자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자동차 구매 관련 수입차 선택에 대한 분석 흥미

김지영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대상 가구 중 국산 준대형차를 보유한 311가구와 수입차를 보유한 6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수입차 보유에 대한 probit 분석을 시행한 연구로서 자동차 구매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 자동차 선택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3인 가구, 고소득 가구, 가구주가 30대, 고학력,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인 경우 수입차를 보유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유류비용 지출이 많은 가구는 수입차 보유확률이 높은 반면, 여행 등 레저비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 대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에 있어 수입차 보유 가구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국산 자동차 가운데 준대형차 이상을 보유한 가구보다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일정한 사양 이상(또는 이하)의 차를 구매하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준대형 국산 자동차와 중형 수입자동차는 잠재적인 구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형 국산차와 중형 수입차가 구매대상을 공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자동차와 기타 소비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동차 구매 목적함수 하에서 다양한 자동차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사양의 자동차가 동일한 잠재적 구매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 구입 자료 또는 구입 시점의 자료가 아니라 횡단면의 보유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점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연령이나 소득은 매년 변화하는 것이며 자동차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구입 시점의 자료 또는 자동차 구입 시점에 대해 활용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수입차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가 33세일 경우, 실제 구매가 발생한 것은 27세이다. 셋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개성을 찾는 계층”이 “수입 자동차의 디자인, 기능, 연비, 차량 용도로부터 개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30대, 고소득, 고학력,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자유로운 개성을 찾는 계층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수입 자동차의 디자인, 기능, 연비, 차량 용도가 국산 자동차에 비해 다양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유류비용이 높은 가구에서 수입 자동차를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수입 자동차를 보유한 시점의 유류비용이기 때문에 역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일 경우 수입 자동차의 연료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유류비용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증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공하고, 추정결과 표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논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V-3 주제

개인연금가입 결정요인 분석

윤성주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주체의 개인연금 보유, 공적·개인연금의 네 가지 보유상태, 그리고 개인연금의 두 종류인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연금보유 결정요인을 (이변량)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층, 여성, 가구원의 구성원이 많은 개인 등의 개인연금 보유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개인연금 보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연금보유상태를 가능한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한 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 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제주체는 개인연금만 가입한 집단으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경제주체는 두 연금 모두를 보유한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 개인연금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은 경제주체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의 세제혜택 중심의 개인연금지원정책을 다양화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토론 요약

개인연금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분석

남재우 / 자본시장 연구원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다층노후보장체계의 구축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공백을 메워줘야 할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의 목표 및 분석 방법론 그리고 최종 실증분석 결과까지 대단히 선명하고 직관적이나 원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설정이 다소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짧은 기간 내에서는 time invariant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입 유무가 아닌 가입 결정 요인 자체는 time varying할 수 있으므로 패널분석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가구단위 분석과 개인단위 분석이 혼재되어 일부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개인단위 분석인 경우 개인의 소득활동 여부, 소득수준 등이 설명변수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주부의 경우 유족연금 및 이혼 시 연금 분할의 대상이므로 사실상 공적연금이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데 비해 개인단위 분석에서는 공적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독신 여성과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셋째, 역선택의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흡연 여부를 사용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설정이다. 넷째, 상속동기에 대한 변수 역시 가구원 수보다는 자녀 수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KIPF

공공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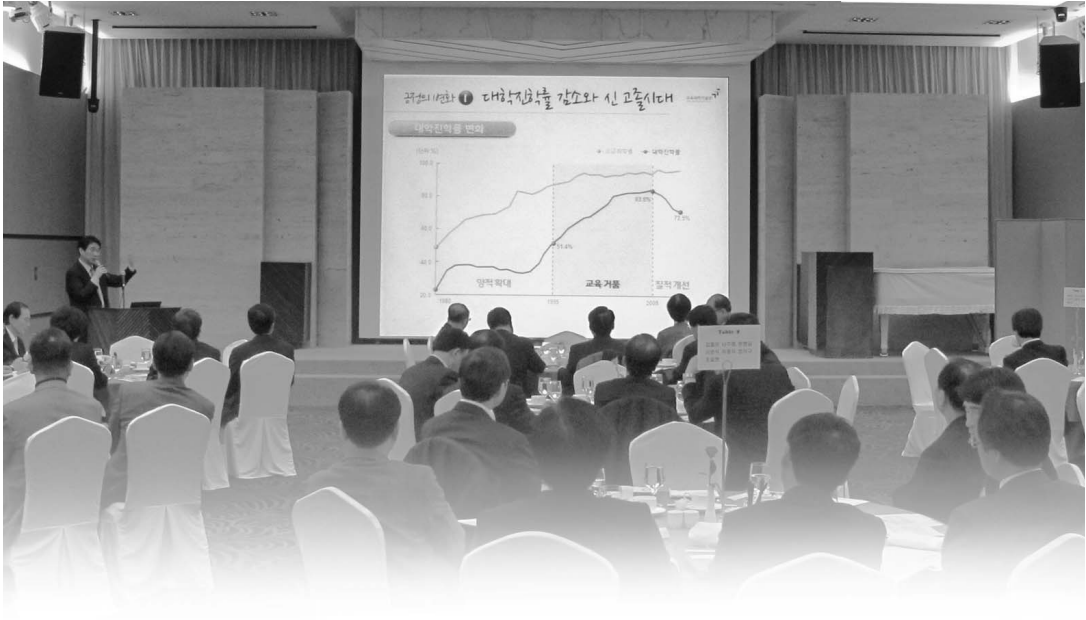


■ 제29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재대국

제29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대한민국은 인재대국
-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08:45~09:25 자유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2년 11월 29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대한민국은 인재대국」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9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한국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신용등급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계승과 발전 및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재, 교육과학기술 부문에서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에서 기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의 잠재력이나 인적 자원은 상당히 우수했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이다. 과연 21세기의 격랑을 헤쳐나감에 있어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현 인재육성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모시고 인재대국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주제발표 요약

대한민국은 인재대국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한민국을 인재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으며, 세계를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많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참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보다 경제사회 발전과 인재개발 간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비결에는 이러한 인재와 경제사회 발전의 선순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 선순환의 동인으로 첫째는 높은 교육열과 문화적 토대를 들 수 있다. 높은 교육열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유교 배경과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 등이 있다. 둘째는 교육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발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 단순히 경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과학기술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 주도로 교육과학기술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일찍이 채택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민간과 정부의 조화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학교들의 역할과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민간과 정부의 절묘한 조합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GDP 대비 교육 규모’, ‘GDP 대비 R&D 투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육 비중을 높여가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분야든 개혁이 지연되면 거품이 발생하는데, 그 거품(bubble)은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장에도 존재할 수 있다. 교육 거품이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시기가 최근 10~15년 정도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개혁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품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 일종의 아카데미 디플레이션(academy defl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열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진학률 또한 계속 높아졌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버블이다. 입시교육도 마찬가지로 과거 10~20%가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입시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70~80%가 대학을 가면서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커졌고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인성이 훼손되는 등 입시 문제도 심각해졌다.

교육과학기술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음에도 대학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과 창의적인 연구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응용분야 등에서는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갖고 있으나 기초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연구는 약하다. 다시 말해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재대국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명박 정부의 5대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중 하나이다. 인재대국을 위해서 교육거품·교육개혁의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서 5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노력했으며, 이 부분에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1) 대학진학률 감소와 신 고졸시대

첫째, 대학진학률을 감소시키고 신 고졸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1995년 대학진학률은 51.4%로 이때가 적정한 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영미국가를 보면 대학진학률이 50% 정도이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40%, 나머지 유럽의 선진국들도 30% 정도 수준

이다. 50% 수준이었던 95년부터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해 진학률이 계속 상승했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s match), 여러 가지의 비효율, 교육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95년 이전이 양적 확대의 시기라면, 95년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는 교육거품이 문제가 되는 시기라 생각한다.

대학진학률을 2008년 83.8%에서 2011년 72.5%까지 약 한 10% 정도 감소시켰는데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고졸시대를 연 것이다. 먼저 고졸자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좋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었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실업계 고등학교라면 당연히 80% 정도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MB정부 출범 초의 취업률이 16.7%였다. 이를 개선하여 취업자 비중을 2011년 33.3%까지 올렸는데, 내년 3월까지 50% 수준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또한 진학자 비중을 2008년 73.5% 수준에서 2011년에는 54.4%로 떨어뜨렸다. 이처럼 정책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 교육시스템이 바뀌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꿈을 키워주고, 좋은 대학, 소위 일류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긍지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연 2회 진로검사를 시행하고, 진로상담교사를 3천명으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씩은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일류 취업중심의 고등학교가 되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많이 확대해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학위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마이스터고는 MB정부의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로 올 3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지금으로선 100% 취업 목표가 거의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이 많으며, 우수 기업들과의 채용 MOU를 통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에도 많이 취업하고 있다. 상위 10~20%되는 학생들도 마이스터고에 많이 진학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에서 직업교육기관을 일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이를 깨고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일류 직업기관들이 생긴 것이다.

(2) 입시 위주 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으로

둘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으로 변화시켰다. 교육의 거품은 결국 입시교육의 거품이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 삼은 것이 입학사정관제도였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면접이나 서류 평가를 통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입학자로 선발하는 제도로 지금은 꽤 정착이 되었다. 입학사정관은 모든 대학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선도대학들을 중심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선도대학의 입학사정관 비율은 20% 정도이며, 서울대의 경우 80%가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면 수업참여도가 높아지고, 학

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입시문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정리되었다. 5년 전만 해도 외고입시의 영어듣기 평가는 대학교 4학년 수준으로, 사교육 기관을 다니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하던 관행을 정리해서 면접과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였다. 또 평가제도도 성취도에 따라 학업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이 다양해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기숙형고교, 자율형공립고, 창의경영학교 등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혔다.

사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실 안의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보다 넓은 교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기부, 주5일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아이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육기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아이들이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실제 전문가들의 강연도 들어보게 하는 것, 아이들이 교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

비행기가 뜨고 나는 원리를 교실에서 배우면 딱딱한데 그것을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산업체에 가서 직접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자는 것으로, 정부는 학생 오케스트라와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여개의 학생 오케스트라가 있으며, 학교 스포츠클럽은 방과 후나 주말에도 할 수 있게 하도록 스포츠 리그전 등을 계속 만들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 학교에서 이를 강조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 징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감성이나 사회성을 길러주는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교육비 부담 경감

셋째, 교육비 경감이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나 매년 계속 10~20%씩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 2007년 한 달에 학생 1인당 평균 25만원 지출하던 것이 2011년 23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누리과정이란 것을 도입하여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비용을 많이 경감시켰다. 5세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모든 계층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4세까지도 20만원씩 보조할 예정이다. 이는 유아교육이 일종의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국가가 유아교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체계가 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도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내려갔으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심지어 절대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 장학금은 거의 2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다음 예산에는 2조 2천5백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소득 수준 7분위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30% 정도까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4) 본격적 대학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넷째, 대학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직선제를 다 폐지했다.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총장을 직선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한 채 국립대학이 발전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국립대학에 공모제를 도입하였다.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전환되어 10~20년 동안 거론되던 법인화 이슈가 정리되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하위 15% 대학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쉬운 듯 보이지만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반발도 굉장히 컸지만 우리나라 처럼 대학의 거품이 큰 고등교육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정리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하위 15%의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최하위의 대학은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하여 퇴출시키는데, 지금까지 총 6개 대학이 퇴출되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대학 자율화도 상당히 많이 진전시켰다.

(5) 창의와 융합의 과학기술 기반 구축

다섯째, 창의와 융합의 과학기술 기반 구축이다. 이제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형에서 이제는 선두주자(First Mover)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선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창의와 융합을 키우도록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은 10위권이지만 과학분야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세계 5위권이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체제를 통해 교육과학과 기술이 함께 융합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을 과목별로 배우지 않고 융합해서 배우는 것을 융합형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이라 한다. 시범학교를 선정해 교원연수를 하는 등 점차 확산시키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지원도 확대해 이공계의 개별교수들이 하는 풀뿌리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가 특히 부족했던 기초과학 분야에 3천여 명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새로운 형태의 연구원으로 과기 특기대학들, 카이스트 등에 캠퍼스를 두게 해서 대학의 연구역량과 결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50개의 연구단을 운영하는데, 연구단장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많은 자율성을 주었다.

원전과 인공지능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나 2021년까지는 독자적인 발사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감히 인재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인재대국 2012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Strength(강점)’는 높은 학업성취도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이다. Digital Literacy란 아이들에게 디지털 자료를 보여주고서 인터넷을 통해 취합하고 분석하게 하는 국가시험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으며 2위와의 격차가 매우 커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점을 부러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IT쪽의 진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IT에 능숙하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그리고 세계 5위권 수준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와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또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요소이다.

‘Weakness(약점)’는 아시다시피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높은 교육비 부담, 낮은 대학경쟁력,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역량 등이 있다.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5년간 계속 집중해 왔다.

‘Opportunity(기회)’는 한국의 높아진 국가 위상으로 인해 교육이나 과학기술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는 점, 한류나 IT분야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의 강점과

발전을 원동력으로 해서 교육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그걸 기반으로 다시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는 선순환의 기회가 여전히 많다.

‘Threat(위협)’ 요소로는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다문화·탈북가정 같은 다양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점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 간다면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교 졸업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2012년에는 66만명인데, 2021년에는 44만명이 되며, 이는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의 1/3이 사라지는 것이다. 비슷한 변화가 초·중등학생 수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한 명 한 명을 더 잘 교육하고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급 규모가 작은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MB정부 이후 새로운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사회의 발전을 교육과학기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긍정의 변화가 이번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유 토론

이병해/명지대학교 교수

조원동/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본 바로 한 5%p 정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50% 정도는 어떤 것의 영향이라 생각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발표자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 변화가 반 정도가 될 것 같다. 물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실업계를 진정한 취업전문학교로 바꿨다는 것이고 이런 변화는 MB정권이 촉발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큰 변화에 순응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학진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다소 바뀐 것 같다.

개인적으로 YS정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실업계 교육을 강조해 왔고, 실제 2+1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때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를 해서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을 꺾을 수가 없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대학을 다 보내봐서 '대학 보냈더니 별거 아니구나' 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50%는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중 하나는 학부모일 때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자녀의 입시 시기가 지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 수시면접을 경험해서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교, 자율형공립고, 창의경영학교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낄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마이스터고만 나와도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정권 교체기에는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계속 이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주호/발표자

교육 분야는 정부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국민들도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연속될 수 있는 방법에는 첫째, 법제화가 있다. 법제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법제화해 놓으면 그것을 뒤집기는 매우 힘들다. 입학사정관제도도 법제화된 상태이나, 교원평가제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해 두었다. 대통령령도 여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학부모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부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정부에서도 쉽게 바꾸기 힘들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를 예로 들면, (물론 자사고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학생을 보장하는 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형태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학교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좋은

성과를 보이면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자사고 중에는 평균 경쟁률이 3:1, 4:1로 계속 유지되는 좋은 학교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호응이 참 중요하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같이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은 학교들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교육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간규제를 도입했다. 적잖은 파장이 있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의 가격규제도 법제화하는 등 규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아마 그러다보니 시간규제나 가격규제를 더 우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존재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가 계속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사교육 대책에서의 핵심은 학부모님들의 마인드이다. 뇌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너무 수준 높은 수학을 배우게 하면 아이들의 뇌 구조가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위험성은 모르고 다들 선행학습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특히나 아이들일 때는 잠을 많이 재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정인익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오늘 우리는 ‘참교육’, ‘인재대국 양성’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장관의 발표를 들었는데, 신 고졸시대에 대한 언급에서 마이스터고 등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LH공사가 순수 고졸자 200여명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했는데, 기계,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 내

신 1등급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었다.

내년 3월에 4년제 학위 과정의 사내 대학을 개교하는데 고졸자들을 채용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사내에서 학위를 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초급 인력 양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 몇 가지 제약들이 있다. 고졸자 채용 수에 대한 제약도 있고, 사내대학 개교에 대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제약들도 있다. 신 고졸시대의 채용에 우리 공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 발표자

신 고졸시대를 여는 데까지 기획재정부도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 대통령도 이를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여겨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다. 특히 현장에서 정인익 부사장처럼 신 고졸시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성진 /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과장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에서 고졸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그 채용분야가 아직까지는 생산직 제조업 위주이다.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채용은 발전회사 같은 경우 제조업과 비슷한 서비스업종에 고졸이 취업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후에도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재직자 특

별전형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진로교육을 할 때 고졸 취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면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에 비정규직이 많아서 잦은 전직으로 인해 연구 성과에도 문제가 있다. 사실 우수한 연구원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대학으로 많이 이직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모두 부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어 뽑는 Two track 채용 방식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현재 1년, 2년 단위로 뽑는 비정규직을 5년, 7년 단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늘려서 하나의 track으로 뽑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정착시켜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호/발표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단 고졸시대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서비스 분야로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대학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사내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졸 채용자들이 채용 이후에도 사내대학을 통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델인 것 같다. 사내대학이 많이 확충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 같은 것을 통해 주변의 대학들이 고졸 채용자들에 특화된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의 정부 출연연도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

소처럼 정말 세계적인 출연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나누어진 24개의 출연연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최근에 출연연에 요구하는 것은 융합연구이고 출연연이 대학과 차별화하려면 국가적인 과제, 대형의 융합연구로 가야 하는데 그게 분야별로 24개 체재로 나눠서 진행되다 보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일 법인화하면서 유연한 조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합의가 되어서 법안이 나왔는데 국회에 가서 아직까지 묶여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도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시간강사제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구조로 창의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시간강사제도도 이번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1년을 연기시켰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총장이나 교수들 차원에서는 강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며, 출연연의 경우도 말씀해주신 채용 구조로 바뀌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연연에 차별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보수 차별, 채용 단계에서의 이원화된 구조 같은 것들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한다. 출연연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용래/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부이사장

말미에 말씀하신 ‘기회’와 ‘위협’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발표에서 다문화가정이 위협의 요소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이 되어야 한

다. 그런데 이들을 위협의 요소로 보는 한 인적자원화 할 수 있는 장벽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 등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위협이 아닌 기회의 요소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호/발표자

부이사장의 말씀에 공감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우리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요소이며, 글로벌 인재로 길러내기에도 훌륭한 자원이므로 우리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언어적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로 이들을 잘 키우면 글로벌 인재로서 커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 지금 당장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류하였다. 하지만 정말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미리 착안하여 말씀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우리 교과부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송대희/좌장

미국 부시 대통령의 교육정책 목표가 “No Child Left Behind” 즉,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구호로 상징되는 것이 선진국의 교육인데, 오늘 장관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앞서간다, 아카데미 거품까지 끼어 있고 교육하려는 욕구도 너무 크다, 민관공이 너무 앞서간다, 그 열기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양보다

는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나 대학 고등교육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을 높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어 싸이와 같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인물이 탄생하게 하자. 그것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서 질 좋은 인재대국으로 가자. 그리고 그런 잠재력을 기존 교육 제도가 억압하지 못하도록 풀어주자”는 말씀인 것 같다. **KIP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2-11

요약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10월 8일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의 전반적인 축소를 제안하는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중국 정부는 11월 19일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규정을 발표함
- 홍콩 정부는 10월 26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지세법(Stamp Duty Ordinance) 개정안을 발표함
- 뉴질랜드에서는 10월 2일 세율 및 신고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Taxation (Annual Rates, Returns Filing, and Remedial Matters) Bill)이 법률로 확정됨

1. EU의 VAT 경감세율 축소 제안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10월 8일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의 전반적인 축소를

제안하는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VAT directive에 따르면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로 단일표준세율이어야 하나, Annex III에서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현행 EU의 부가가치세율은 VAT directive¹⁾ Article 93부터 130과 Annex III에 규정됨
- 회원국은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5%를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개나 두 개의 경감세율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VAT directive article 98(2)에 따르면 모든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용역(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은 경감세율의 적용이 배제됨
 - 배제 사유는 역내 시장에서 경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각국에서 적용하는 경감세율에는 영세율, 5% 경감세율, 중간세율(5~15% 사이의 세율)이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에서 경감세율의 전반적인 축소를 제안함
- 구체적인 내용은 “VAT 세율구조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guiding principal)”에 표시됨

VAT 세율구조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guiding principal)

- ① 역내 시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감세율을 폐지
- ② 해당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다른 EU 정책과 상반되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세율을 폐지
- ③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VAT 세율의 적용

1)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J L 347, 2006. 11, 12, p. 1



-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역대 시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감세율은 폐지하여야 함을 제안함
 - VAT directive의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의 경우 경감세율의 적용이 역대 시장 활동을 저해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가 많았음
 - 하지만 2010년에 발행된 『VAT의 미래에 관한 녹색(green paper)』에 따르면 개인기업(private company)과 면세거래자(VAT-exempt trader)가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VAT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경계지역에서는 경쟁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둘째, 해당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다른 EU 정책과 상반되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세율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환경 보존 정책에 반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책적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과세거래로는 물과 에너지의 공급, 거리 청소·쓰레기 수집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이 있음
- 셋째,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VAT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과 유사한 것을 on-line에서 공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예인 도서의 경우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에 해당되어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E-Book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잡지 등이 있음
 - 또한,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off-line

에서는 Annex III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되어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on-line에서는 경감세율의 적용이 배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태훈 회계사)

2. 중국의 배당소득세 차등과세 규정

- 중국 정부는 2012년 11월 19일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규정을 발표함(財稅[2012] 85호)
 - 기존에는 배당소득 과세표준의 50%(과세표준 경감률)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질세율은 10%로 과세하였음
 - 반면, 새로운 규정은 <표 1>과 같이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 경감률을 차등화하여 실질세율이 5~20%가 되도록 함
 - 이 규정은 상해 또는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또한, 배당소득 지급 시 발행회사가 배당소득의 5%를 원천징수한 후에 주식 처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회사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과세방식을 사용함
 - 이러한 배당소득 차등과세 조치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중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표 1〉 중국의 상장주식 개인 배당소득세

(단위: %)

주식 보유기간	과세표준경감률	배당소득 명목세율	배당소득 실질세율
~1개월 미만	0	20	20
1개월 이상~1년 미만	50		10
1년 이상~	75		5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전문연구원)

3. 홍콩의 인지세법 개정안

- 홍콩 정부는 10월 26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지세법(Stamp Duty Ordinance) 개정안을 발표함
 - 단기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세율을 <표 2>와 같이 인상하고, ‘단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이 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특별인지세를 연대 납부해야 함
 - 또한, 주택매입자인지세(Buyer's Stamp Duty)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장가격의 15%를 주택매입자인지세로 과세함
 - 이러한 인지세 개정안은 2012년 10월 27일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표 2> 홍콩 특별인지세 세율 인상안

(단위: %)

주택 보유기간	현행	개정
~6개월 미만	15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10	15
1년 이상~2년 미만	5	10
2년 이상~3년 미만	-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전문연구원)

4. 뉴질랜드의 2012년 세율 및 신고 등에 대한 세법

- 뉴질랜드에서는 10월 2일 세율 및 신고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Taxation (Annual Rates, Returns Filing, and Remedial Matters) Bill)이 법률로 확정됨
 -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율 동결

- 2011~12 과세연도에 적용되던 소득세율을 그대로 2012~13 과세연도에도 적용함

<표 3> 뉴질랜드 2012~13년 소득세율

(단위: 뉴질랜드달러, %)

구분		소득세 세율	
개인	과세표준	~14,000 이하	10.5
		14,000 초과~48,000 이하	17.5
		48,000 초과~70,000 이하	30
		70,000 초과~	33
법인 ¹⁾		28	
수탁자(Trustee) ¹⁾		33	
비적격 트러스트의 과세대상 분배금 ¹⁾		45	

주: 1) 단일세율로 과세함

나. 신고절차 간소화

- 소득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
 - ‘IR 3 소득세 신고서’와 ‘개인소득세 요약’ 서식을 웹에 기반한 개인별 소득세 신고서로 통합함
 -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개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및 과거 4년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인의 소득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일정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non-filing taxpayers)’로 분류됨
 - 이러한 납세자는 종전에 소득세 신고서를 과세연도마다 선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었음
 -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납세액을 환급받음

- 납세자들의 회계기록을 국세청이 승인한 해외 정보 저장 업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익분배계획에 대한 과세

- 수익분배계획(profit distribution plans)에 따라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은 다른 배당재투자계획(dividend reinvestment plan)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수익분배계획은 배당결의 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또는 배당받은 주식을 환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 현행 규정은 수익분배계획에 따라 주식이 배당된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환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환매대금(현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반면, 다른 배당재투자계획에서는 주주가 배당받은 대상이 주식인지 현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개정법은 수익분배계획에 따라 주식이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배당재투자계획에 대한 일관된 과세처리가 가능하게 함

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 대한 과세

- 실패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도 개발을 포기한 과세연도에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행정해석이 공제를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률 규정으로 입법화함

마. 키위세이버 최소납입금 기준 인상

- 국민연금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에 대한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최소납입금 기준을 근로소득의 2%에서 3%로 인상함
- 키위세이버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
- 종전에 근로자는 세전 근로소득의 2%, 4%, 8% 중 선택하여 키위세이버에 납입할 수 있었으며, 납입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2%)이 적용되었음
 - 또한, 고용주도 지급한 근로소득의 최소 2%만큼 의무적으로 납입 의무가 있었음
- 최소납입금 인상 조치는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부담분을 높이고 정부 부담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키위세이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이미 2011년에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연 1,042.86뉴질랜드달러에서 절반인 521.43뉴질랜드달러로 축소되었음

바. 은행 그룹의 자본 기준 강화

- 외국계 은행에 대한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여, 뉴질랜드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4%에서 6%로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전문연구원)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재무장관회의, 유로존 재정 감독 강화 및 금융거래세 도입 등 주요 내용 논의 (2012.11.13.)¹⁾
 - (Two-Pack) 재정 감독 관련 법률인 ‘Two-pack’의 진행 상황 점검 및 올해까지 유럽의회와 1차 심의 (first reading agreement) 추진 예정
 - (금융거래세) EU 집행위는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하여 절차 진행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촉구
 - 도입을 반대한 회원국에서 금융거래세가 EU 내 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를 요구, 이에 12월 초 진행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
 - * 현재 금융거래세 도입을 찬성한 회원국은 11개국임
 - (단일 금융감독기구) 구체적인 실천방안 내용 점검 및 합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올해까지 입법 절차 완료가 불투명한 상태
 - (은행건전성 감독) 은행자본 규제강화(Basel III) 관련사항을 EU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추진 중, 2013~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
 - (기타) 기후변화 자원조달과 관련된 EU의 지속적인 지원, EU 통계 시스템의 governance 강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
- EU 집행위, ‘European Aid Fund’ 설립 제안(2012.11.15.)²⁾
 - (내용) 극빈층(the most deprived) 지원을 위한 펀드인 ‘European Aid Fund’를 EU 예산으로 설립할 것에 대해 제안
 - 이 펀드는 저소득층 어린이 등을 포함하여 음식, 옷,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
 - (지원 규모) 2014~2020년 동안 약 25억유로로 예상, 회원국은 이 예산의 일부를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활용이 가능
 - 회원국은 15% 부담하게 되지만, EU Aid Fund 85% 활용이 가능함
-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 (2012.11.23.)
 - 7월에 신청한 구제 금융에 대해 지원 규모와 상환조건, 건축 방안 등을 두고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 160억~170억유로로 구제금융 규모 합의
 - 12월초 유로그룹회의에서 최종규모와 건축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
 - * 키프로스 정부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무원 임금과 국민 연금 9.5~15% 삭감 및 정년 연장(63세 → 65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차기 구제금융자금 집행 및 국가부채 감축 방안 합의 발표 (2012.11.26.)³⁾
 - 그리스가 재정개혁과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금융 지원과 국가부채 감축에 합의⁴⁾
 - 단, 지난 3월에 비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개혁 프로그램 이행 지연으로 국가부채 지속가능성이 약

1) 유럽의회,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Budget) and Conciliation Committee”

2) 유럽연합, “Poverty: Commission proposes new 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3) 유럽연합, “Eurogroup statement on Greece”

4) 자세한 내용은 12월 제1호 「그리스 재정동향」 참조



화되었다고 지적

* 유럽의회에서는 성명을 통해 그리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2012.11.22.)⁵⁾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 2007~2009년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는 아일랜드(1.2%p)이고 한국은 0.3%p 증가함



■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관련 보고서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Social expenditure (SOCX) data update 2012⁶⁾ 발표(2012.11.15)

•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 평균이 금융위기 전인 2007년 GDP 대비 19%에서 위기 이후 3%p 증가한 22%대를 유지 ([그림 1] 윗쪽 그림)

- 경제위기 이후 2009년에 최고치 기록
- 이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지원(social support)과 경제침체로 인한 소득보조(income support benefits) 명목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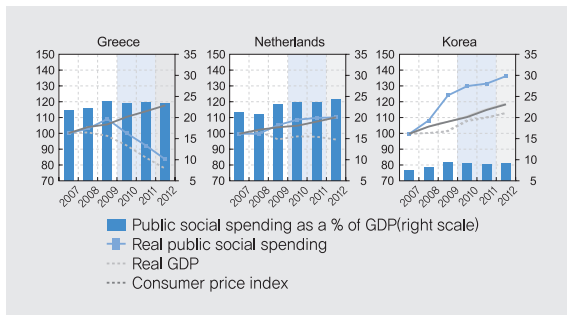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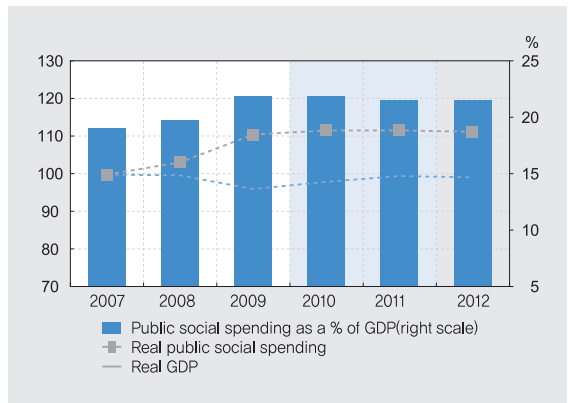
• 국가별 사회지출의 규모 추이를 보면 그리스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그림 1] 아래쪽 그림)

- 한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은 경제위기 때보다는 여전히 그 규모는 크지만 감소 추세에 있음

• 육아수당(childcare allowance)과 세액공제(tax credit)와 같은 가정지원(family spending)의 GDP 대비 비중이 2007년 OECD 평균 2.3%에서 2007~2009년에는 0.3%p 증가

[그림 1] 실질 공공사회지출과 실질 GDP 및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07~'12)

(Real public social spending and real GDP and public social spending in %)



주: 1. 2007년 기준(=100)
 2. 2010년과 2011년의 공공사회지출 합계와 2012년의 추정치는 비유럽OECD 국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1, May 2012 보고서와 European Union's Annual Macro-economic DB인 AMECO 2012년 5월 기준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되었기에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OECD 2012

5) 유럽의회, "Statement by Vice President Rehn in the European Parliament on Greece"

6) • 사회지출(social spending, 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의미하며 일정 기준하에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해 OECD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개발함(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9년 2월호 참고)

• 원문: [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OECD\(2012\)_Social%20spending%20after%20the%20crisis_8pages.pdf](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OECD(2012)_Social%20spending%20after%20the%20crisis_8pages.pdf)

■ 동남아시아 경제전망보고서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2013 with Perspectives on China and India*⁷⁾ 발표(2012.11.18)

- OECD는 2013~2017년의 ASEAN 10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금융위기 전(2000~2007년) 수준인 5.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 내 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
- ASEAN 국가들의 경제는 2017년까지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성장둔화 때문에 중국, 인도, ASEAN을 포함한 아시아신흥국(Emerging Asia)들의 경제성장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에서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존재는 분명하나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표 1〉 실질GDP 성장(연간 변화율)

(단위: %)

	2011	2000~2007	2013~2017
ASEAN 6개국			
브루나이	2.2	-	2.4
인도네시아	6.5	5.1	6.4
말레이시아	5.1	5.5	5.1
필리핀	3.9	4.9	5.5
싱가폴	4.9	6.4	3.1
태국	0.1	5.1	5.1
CLMV 4개국			
캄보디아	7.1	9.6	6.9
라오스	8.0	6.8	7.4
미얀마	5.5	-	6.3
베트남	5.9	7.6	5.6
아세안 10개국 평균	4.6	5.5 ¹⁾	5.5
CLMV 평균	6.0	7.8 ²⁾	5.9
아시아 국가 평균 (아세안 10개국+중국, 인도)	7.8	8.6 ¹⁾	7.4
중국, 인도			
중국	9.2	10.5	8.3
인도	6.8	7.1	6.4

주: 1. 브루나이, 미얀마 제외

2. 미얀마 제외

자료: OECD Development Centre, MPF-2013

■ 3사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12.11.21)

- OECD 회원국들의 3사분기 실질GDP는 전분기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나라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전분기 성장률보다 증가한 국가는 프랑스, 미국, 영국 등
 - 프랑스, 미국, 영국이 각각 0.2%, 0.5%, 1%로 나

7) • 본 보고서는 ASEAN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개발, 지역협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더불어 중국, 인도와 관련된 경제이슈 또한 포함하는 OECD의 연간보고서임

• Executive summary: <http://www.oecd.org/dev/asiaandpacific/SEA02013%20E-Executive%20summary.pdf>



타남. 특히 영국은 런던올림픽 영향으로 지난 분기 -0.4%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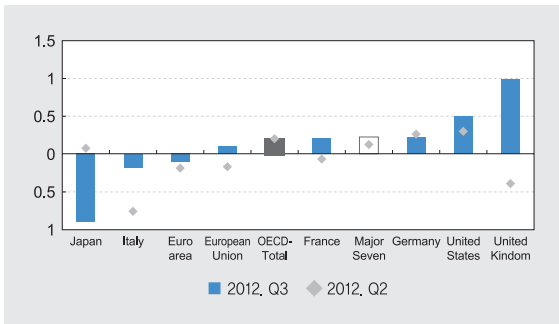
- 경제성장의 둔화 및 침체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 일본은 전분기 성장률이 -0.9%를 기록하였으나 3사분기 성장률은 0.1%기록
 - 이탈리아는 전분기 성장률 -0.7%에서 -0.2%를 기록하여 15분기 연속으로 감소
 - 독일은 전분기 성장률 0.3%에서 0.2%로 비슷한 수준 유지
- EU 국가들은 전분기 성장률 -0.2%에서 0.1%로 증가하였지만 유로지역 국가들은 -0.2%에서 -0.1%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2012 Update⁸⁾ 발표(2012.11.21)

- 세계금융위기 여파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 노력으로 OECD 여러 국가들은 재정건전화⁹⁾ 프로그램들을 채택하여 왔음
- 2011년 보고서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재정건전화 노력은 재정수지를 개선시킴
 - OECD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9~2011년 GDP 대비 1.8%p 감소하였으나 2011년 평균재정적자는 GDP 대비 6.3%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 OECD 회원국들의 총 부채 또한 2009년 GDP 대비 92.5%에서 2011년 103%로 증가
- 몇몇 국가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소개하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행기간도 연장하고 있음(그림 3) 참고
-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 또한 재정건전화 계획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
 - 지방정부 대출억제, 적자규칙(deficit rule)강화, 지출한도(spending limit) 도입, 기존 재정준칙 시행의 강화 등
- 대부분의 재정건전화는 지출감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각국의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화 전략 특성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

[그림 2] 국가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주 1.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변화율로 계절조정을 거침
 데이터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Name=350>
 그래프자료: OECD Newsroom Monthly Statistics 21 November 2012

■ 각국의 재정건전화전략(fiscal consolidation strategies) 보고서 Restoring Public Fin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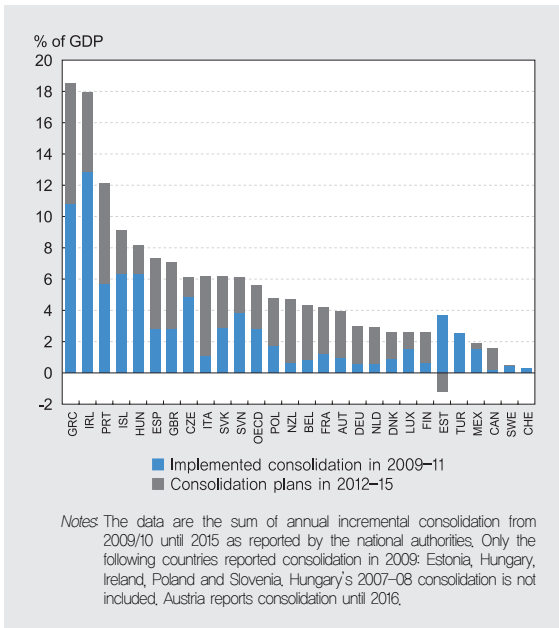
8) OECD는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전략에 대한 2010~11년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2011년 OECD 고위급 예산책임자(Senior Budget Officials) 연간회의를 가진 바 있고 2011년 12월에는 각국에 "OECD Fiscal Consolidation Survey 2012"라는 설문 실시. 금번 보고서는 각국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OECD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함

9) 본 보고서에서 재정건전화란 누적된 부채와 정부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관된 정책으로 정의됨

[표 2] 국가별 분류

그룹	국가
Countries with IMF/EU/ECB programmes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Countries under distinct market pressure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Countries with substantial deficits and/or debt, but less market pressure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Countries with no or marginal consolidation needs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에스토니아, 한국, 터키,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림 3] 각국의 '09~'11년 재정건전화 시행과 '12~'15년 계획



주: 각국의 수치는 재정수지 개선의 정도를 나타냄

※ 한국 관련 내용

• (경제상황)

- 실질GDP 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2011년은 3.6%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대부분 OECD 회원국들보다 빠르게 극복
- 재정수지는 2009년 GDP 대비 1.1% 적자에서 2010년 1.3% 흑자를 기록. 이는 2010년 지출억제 재정정책과 긴축재정에 기인
- 총부채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35%대를 유지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조치들로는 201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1년 9월에 업데이트된 2011-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소개함

■ 세계경제 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No.92¹⁰⁾ 발표(2012.11.27)

- 2013, 2014년 세계경제는 회복이 더디고 불균형할 것으로 전망
 - 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로 전망하였고 2014년에는 2.3%로 전망
 -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0.1%로 전망하여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2014년에는 1.3%로 전망
 -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한다면 2013년 2.3%, 2014년 2.8%로 전망되고 일본은 2013년 0.7%, 2014년에는 0.8%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미국의 재정정책의 교착상태(stalemate)와 계속되는 유로지역의 불안정성이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도록 결단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10) ebook: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ced/economics/oced-economic-outlook-volume-2012-issue-2_eco_outlook-v2012-2-en



〈표 3〉 세계경제 전망 개요(전년 대비 비율)

(단위: %)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Real GDP growth																
United States	2.2	2.0	2.8	3.0	1.2	2.1	2.0	2.3	2.6	2.9	3.0	3.3	3.5	1.8	2.2	3.2
Euro area	-0.4	-0.1	1.3	-0.1	-1.3	-0.2	0.4	0.8	1.2	1.3	1.6	1.7	1.9	-0.5	0.6	1.6
Japan	1.6	0.7	0.8	-3.5	-0.4	1.5	1.9	1.9	2.7	2.8	-5.0	1.0	1.0	0.3	2.0	-0.1
Total OECD	1.4	1.4	2.3	1.1	0.5	1.5	1.8	2.1	2.3	2.5	1.9	2.7	2.8	1.0	1.9	2.5
Inflation ¹⁾																
United States	1.8	1.8	2.0	1.5	1.8	1.5	1.8	1.9	1.8	2.0	2.0	2.0	2.0			
Euro area	2.4	1.6	1.2	2.5	2.1	1.8	1.7	1.6	1.4	1.4	1.3	1.2	1.2			
Japan	0.0	-0.5	1.3	-0.3	-0.2	-0.9	-0.7	-0.3	-0.3	-0.3	1.8	1.8	1.8			
Total OECD	2.1	1.7	1.9	2.0	2.0	1.7	1.8	1.8	1.7	1.8	2.0	2.0	2.0			
Unemployment rate ²⁾																
United States	8.1	7.8	7.5	8.1	7.9	7.9	7.8	7.8	7.7	7.7	7.6	7.5	7.4			
Euro area	11.1	11.9	12.0	11.3	11.5	11.7	11.9	12.0	12.1	12.1	12.0	12.0	11.9			
Japan	4.4	4.4	4.3	4.2	4.4	4.4	4.4	4.3	4.3	4.3	4.3	4.3	4.3			
Total OECD	8.0	8.2	8.0	8.0	8.1	8.1	8.2	8.2	8.1	8.1	8.0	8.0	7.9			
Fiscal balance ³⁾																
United States	-8.5	-6.8	-5.2													
Euro area	-3.3	-2.8	-2.6													
Japan	-9.9	-10.1	-7.9													
Total OECD	-5.5	-4.6	-3.6													

주: 1) USA: price index for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Japan: consumer price index and the euro area: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Percent of the labour force

3) Percent of GDP

1. Real GDP growth is seasonally and working-day adjusted annualised rates, Inflation is measured by the increas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or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for the United States and total OECD. The "fourth quarter" columns are expressed in year-on-year growth rates where appropriate and in levels otherwise.

〈표 4〉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국 가	2011	2012	2013	2014
호 주	2.7	0.6	0.8	1.8
캐 나 다	2.6	2.0	1.8	2.4
프 랑 스	1.7	0.2	0.3	1.3
독 일	3.1	0.9	0.6	1.9
그 리 스	-7.1	-6.3	-4.5	-1.3
아일랜드	1.4	0.5	1.3	2.2
이탈리아	0.6	-2.2	-1.0	0.6
일 본	-0.7	1.6	0.7	0.8
한 국	3.6	2.2	3.1	4.4
포르투갈	-1.7	-3.1	-1.8	0.9
스 페 인	0.4	-1.3	-1.4	0.5
스 웨 덴	3.9	1.2	1.9	3.0
영 국	0.9	-0.1	0.9	1.6
미 국	1.8	2.2	2.0	2.8
중 국	9.3	7.5	8.5	8.9
인 도	7.8	4.5	5.9	7.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92 database

※ 한국관련 내용

-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at market prices)은 2012년 중반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세계무역증가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13년에는 3.1%, 2014년에는 4.4%로 전망
- 민간소비(Private consumption)는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수축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중앙은행 목표범위 2.5~3.5% 사이로 전망
- 우선순위로 중기재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
 - 그러나 세계경제가 예측된 경제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건전한 재정과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정과 통화(monetary) 면에서 여력이

있다고 밝힘

- 중기적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 서비스부문의 노동력 참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강조

〈표 5〉 한국의 경제주요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urrent prices KRW trillion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 prices)				
GDP at market prices	1065.0	6.3	3.6	2.2	3.1	4.4
Private consumption	576.0	4.4	2.3	1.7	2.7	3.2
Government consumption	170.3	2.9	2.1	4.3	4.0	3.0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309.7	5.8	-1.1	-0.1	2.8	4.6
Final domestic demand	1056.0	4.6	1.2	1.6	3.0	3.6
Stockbuilding ¹⁾	-30.4	2.5	0.8	-0.2	-0.1	0.0
Total domestic demand	1025.6	7.2	2.0	1.4	2.8	3.5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529.6	14.7	9.5	4.3	8.8	12.9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490.2	17.3	6.5	3.0	8.6	11.6
Net exports ¹⁾	39.5	-0.6	1.8	0.8	0.3	1.0
<i>Memorandum items</i>						
GDP deflator	-	3.6	1.7	1.3	1.6	1.5
Consumer price index	-	2.9	4.0	2.2	2.7	3.0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	2.6	3.8	2.2	2.4	2.8
Unemployment rate	-	3.7	3.4	3.4	3.6	3.4
Household saving ratio ²⁾	-	4.3	3.1	2.8	3.0	3.3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	1.3	0.5	0.9	1.6	1.7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	34.3	36.1	36.4	36.4	36.7
Current account balance ³⁾	-	2.9	2.4	3.3	2.4	1.8

주: 1) Contributions to changes in real GDP, actual amount in the first column

2) As percentage of disposable income

3) As a percentage of GDP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92 database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호주

재정수지는 12억호주달러로 예산안(Budget)의 25억호주달러에 비해 50% 이상 감소함

1. 예산·결산 등

- FY2012-13 반기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표 (2012.11.27)
 - (성장) 경제성장률은 FY2012-13과 FY2013-14 모두 3%로 예측됨. 이 수치는 FY2012-13 Budget에 비해 0.25%p하락한 수치임
 - (고용) 실업률은 2012년 9월 5.25%에서 약간 증가한 5.5%로 예측되며 주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호주의 경제는 견고함

〈표 6〉 FY2012-13 주요경제변수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경제성장률 ¹⁾	3	3	3	3
고용률	1	1.25	1.5	1.5
실업률	5.5	5.5	5	5
소비자물가지수(CPI)	3	2.25	2.5	2.5
경상성장률	4	5.5	5.25	5.25

주: 1) 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증가율,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 기준 연증가율, 실업률은 반기 증가율

자료: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표 7〉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예산안	반기	예산안	반기	예산안	반기	예산안	반기
수입 ¹⁾ (Receipts)	368.8	367	392.5	392.6	413.6	410	438.4	434.6
GDP 대비 비율	23.8	24	24	24.3	24	24.1	24.2	24.3
지출(Payments)	364.2	363.2	387.3	387.8	404.9	403.9	427.3	425.2
GDP 대비 비율	23.5	23.8	23.7	24	23.5	23.8	23.6	23.7
예산수지 ²⁾ (Underlying cash balance)	1.5	1.1	2	2.2	5.3	3.3	7.5	6.4
GDP 대비 비율	0.1	0.1	0.1	0.1	0.3	0.2	0.4	0.4
재정수입 ¹⁾ (Revenue)	376.1	373.7	402.2	403.2	424.8	421.9	449.6	446.4
GDP 대비 비율	24.2	24.4	24.6	25	24.7	24.8	24.8	24.9
재정지출(Expenses)	376.3	375	398.5	397.9	416.4	413.7	439	435.8
GDP 대비 비율	24.3	24.5	24.4	24.7	24.2	24.3	24.2	24.3
재정수지(Fiscal balance)	2.5	1.2	2.6	4.3	7	6.9	9.5	9.8
GDP 대비 비율	0.2	0.1	0.2	0.3	0.4	0.4	0.5	0.5

주: 1)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포함

2)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예산수지) FY2012-13 반기재정보고서(MYEFO)의 예산수지는 11억호주달러로 5월에 발표된 예산안(Budget)의 15억호주달러보다 줄어들었으나 흑자상태는 유지함
- (재정수입) FY2012-13의 재정수입은 3,737억호주달러(GDP 대비 24.4%)로 예산안(Budget)에 비해 23억호주달러(0.6%) 감소함
- (재정수지) FY2012-13 반기재정보고서(MYEFO)의

〈표 8〉 FY2012-13 예산안과 FY2012-13 반기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

	Budget	MYEFO	Change	
			금액	비율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63,050	163,930	880	0.5
부가급부세 (Fringe benefits tax)	3,900	4,040	140	3.6
법인세 (Company tax)	75,032	72,982	-2,050	-2.7
연금세 (Superannuation funds)	8,250	8,250	0	0
자원세 (Resource rent taxes)	7,410	5,580	-1,830	-24.7
판매세 (Total sales taxes)	51,716	51,960	244	0.5
소비세 (Total excise duty revenue)	26,885	26,490	-395	-1.5
관세 (Total customs duty)	7,370	7,830	460	6.2
기타간접세 (Total o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3,323	3,339	17	0.5
조세수입 (Taxation Revenue)	354,626	352,092	-2,534	-0.7
세외수입 (Non-taxation revenue)	21,445	21,647	202	0.9
총재정수입 (Total Revenue)	376,071	373,739	-2,332	-0.6

주: 1) 미래기금수익(Future Fund earnings) 포함
 자료: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FY2012-13 반기재정보고서(MYEFO)의 총재정지출은 예산안보다 12억호주달러 하락한 3,750억호주달러로 전망
- 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결정 및 거시경제변수 변동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감소

〈표 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 2011-12 예산안 재정지출	376,273	398,503	416,449	439,044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1,224	-649	-2,744	-3,233
- 정책결정효과 ¹⁾	215	530	596	223
- 거시경제변수 변동효과	245	576	29	199
- 공공채무이자지급	0	-313	-377	-527
- 프로그램변수 변동효과	1,299	-631	-1,522	-1,742
- 기타변화효과	-2,984	-810	-1,470	-1,386
■ 2011-12 MYEFO 재정지출	375,049	397,854	413,704	435,811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표 10〉 FY2012-13 예산안과 반기재정보고서의 가능별 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예산안	반기	예산안	반기	예산안	반기	예산안	반기
일반공공서비스	22.1	24.4	22.8	23.1	23.6	23.8	24.7	24.7
국방	21.6	21.6	22.2	22.2	23.1	23.2	24.5	24.6
공공질서 및 안전	4.0	4.0	3.9	4.0	3.9	4.0	4.0	4.0
교육	29.6	28.7	29.9	29.3	31.7	30.6	33.8	32.5
보건	61.0	61.0	64.1	63.2	67.2	66.7	71.1	70.8
사회보장 및 복지	131.7	131.8	138.2	138.4	143.1	143.1	150.4	150.6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7.3	7.3	9.0	9.0	9.3	9.3	9.6	9.6
문화	3.6	3.6	3.4	3.4	3.3	3.3	3.3	3.3
에너지·연료	6.5	6.5	7.8	7.8	8.0	8.0	8.2	8.1
농림수산	2.6	2.6	2.6	2.6	2.7	2.6	3.1	3.1
광업, 건설·제조	2.1	2.1	2.1	2.2	2.2	2.3	2.4	2.4
교통·통신	5.0	5.0	6.7	6.8	7.0	6.4	5.6	6.1
경제 (other economic affairs)	9.3	9.8	9.3	9.2	9.2	8.8	9.2	8.7
기타 지출	70.0	66.8	76.4	76.6	82.1	81.5	89.1	87.1
총지출	376.3	375.0	398.5	397.9	416.4	413.7	439.0	435.8

자료: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2012년 3차 수정예산안 발표(PLFR: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12.11.14)
 - 3차 수정예산안의 총지출은 3,577억유로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6억유로 감소
 - 재정적자는 2012년 GDP의 4.5% 규모(836억유로)로 기존의 목표 유지
 - 탈세방지 및 과세 최적화에 중점, 2012년 본예산 대비 10억유로 추가세입 계획
 -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해외 유입 자금에 대해 60%로 과세
 - 담배와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 허위 신고 단속 강화

〈표 11〉 FY2012 3차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1 실적(A)	2012 본예산(B)	2012 3차 수정예산안(C)	C-A	C-B
기본 지출	275.8	274.9	273.7	-2.1	-1.2
부채 부담	46.3	48.8	46.4	0.1	-2.4
연금 비용	35.8	37.6	37.6	1.9	0.0
총지출	357.9	361.3	357.7	-0.2	-3.6

자료: PLFR3 2012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그리스

1. 기타

- 그리스 통계청(ELSTAT)은 2012년도 3/4분기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였다고 발표¹¹⁾ (2012.11.14)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4%까지 감축하는 채무감축 목표에 합의했으며, 구제금융자금 437억유로를 지원받을 예정¹²⁾ (2012.11.27)
 - (구제금융) 지원 금액 437억유로는 그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315억유로를 비롯해 3분기·4분기 지급 예정액을 포함
 - 12월 중 344억유로(재정자금 106억유로, 은행 자본확충자금 238억유로), 2013년 1분기에 93억유로를 지원받을 예정
 - * 그러나 최종 승인은 각 회원국의 필요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12월 13일 예정)
 - (국가부채) 그리스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GDP의 20%인 400억유로를 추가 감축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채무 감축 방안을 논의 중
 - 부채 감축 목표 2016년 GDP 대비 175%, 2020년 120%에서 124%로 소폭 완화
 - * IMF에서는 2022년까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0%보다 낮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의
 - (지원 방안) 추가 지원은 국가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리스 정부의 철저한 구조개혁 이행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11) Quarterly National Accounts, 그리스 통계청

12) EU, "Eurogroup statement on Greece" 내용 참조

- (이자율) 기존에 지원한 양자대출 금액(Greek Loan Facility: GLF) 530억유로의 이자율을 100bp 인하
 - (만기연장) 양자대출(GLF)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만기를 15년 연장, EFSF에서 지원한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10년 유예
 - (보증비용) EFSF 대출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보증비용을 10bp 인하
 - (회원국 이익 이전) 국채매입프로그램(SMP)에 따라 각 회원국 중앙은행의 그리스 국채 보유에 따른 이익을 2013년 회계연도부터 그리스에 이전
- * 단, 이자율 인하 및 회원국 이익 이전은 구제금융 지원국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제외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표 12〉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 지출

(단위: 백만유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2012 increase/decrease
총량(Gross) ¹⁾	18,161	19,353	19,956	18,668	18,397	18,413	1.4%
순(Net)	17,600	18,753	18,478	17,112	16,855	16,904	-4.0%

주: 1) 주로 연금기여금과 ESF 자금제공으로 이뤄진 지출보충금(appropriation-in-aid)을 포함

자료: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2007-2012(2012.11.14)

- 2012년 공공부문 임금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1년(146억 3,800만유로)보다 1.6% 감소한 144억 200만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이후 공공부문 임금이 감소한 이유는 신규채용의 일시중단, 공공부문 인력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법(Public Interest Act)의 재정긴급조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아일랜드

1. 기타

- 공공지출개혁부, 2007-2012년까지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 지출보고서 발표(2012.11.14)
- 아일랜드는 2015년까지 구조적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감소시켜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지출을 감소해야만 함
- 2007-12년까지 총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은 1.4% 증가, 순 공공부문임금과 연금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13〉 2007~12년 부문별 공공부문 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유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12 증감률
보건	6,960	7,350	7,109	6,399	6,086	5,986	-14.0
교육	5,140	5,484	5,305	4,865	4,891	4,846	-5.7
공무	1,917	2,033	1,946	1,730	1,826	1,822	-5.0
안보	1,534	1,644	1,567	1,433	1,429	1,363	-11.2
주정부기관	549	587	544	486	407	384	-30.1
합계	16,102	17,097	16,471	14,914	14,638	14,402	-10.6
전년대비 증감률		6.2	-3.7	-9.5	-1.8	-1.6	

자료: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2007-2012 (2012.11.14)

- 전체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지출에서 연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5%에서 2012년 14.8%를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2007년(14억 9,800만유로)부



터 2012년(25억 200만유로)까지 67% 증가
 - 연금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2009년 이후 공공부문 임금의 지속가능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의 증가와 연금수령자의 수명연장 때문임

〈표 14〉 2007~12년 부문별 연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유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12 증감률
보건	269	259	330	456	391	582	116.4
교육	556	683	796	807	874	874	57.2
공무	267	277	346	382	382	464	73.8
안보	381	411	485	464	486	483	26.8
주정부기관	25	26	50	89	84	99	296.0
합계	1,498	1,656	2,007	2,198	2,217	2,502	67.0
전년대비 증감률		10.5	21.2	9.5	0.9	12.9	

자료: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2007-2012 (2012.11.14)

■ 재무부, 중기재정보고서(Medium-Term Fiscal Statement) 발표(2012.11.15)

- (재정전망) 201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General Government deficit)는 GDP 대비 8.3%인 135억유로로 추정되어 2010년 12월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Council)가 설정한 기준인 GDP 대비 8.6% 이내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아일랜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경제전망) 2013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
 - 이것은 지난 6개월간 대외환경의 악화를 반영하여 올해 4월의 2013년 성장전망치보다 0.75% 하향조정된 것임
 - 2013년 하반기 동안 수출시장의 상승세를 가정한다면 2014-15년에 걸쳐 강한 수출은 GDP의 가속

성장을 뒷받침해야 함

〈표 15〉 2012~15년 주요 경제 및 재정 지표 전망

(단위: 십억유로, %)

	2012	2013	2014	2015
거시경제 전망 (%)				
실질 GNP	1.4	0.9	1.7	2.1
실질 GDP	0.9	1.5	2.5	2.9
소비자 물가 지수(HICP)	2.1	1.7	1.8	2.0
취업률	-1.2	0.0	0.9	1.3
실업률	14.8	14.5	13.9	13.0
재정 전망 (% of GDP)				
일반정부 재정수지	-8.3	-7.5	-5.0	-2.9
일반정부부채	118	121	120	117

자료: 재무부, Medium-Term Fiscal Statement(2012.11.15)

- (재정목표) 현재까지 EU/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정된 모든 재정목표는 달성됨
 - 이런 재정상황의 향상은 지출축소와 수입증가를 위한 재정건전화 조치의 실행 결과이며 아일랜드의 금융부문을 지원해 주기 위한 EU의 헌신을 통해 아일랜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됨
 - 2010년 가을 이후로 처음으로, 아일랜드의 국채 수익률은 최근에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시장에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줌
- (재정건전화) 연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동안 재정건전화 총량으로 약 86억 유로가 필요할 것임
 - 2011년의 일반정부 재정적자(General Government deficit) 목표는 달성되었고, 2012년의 일반정부 재정적자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7.5%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표 16〉 2013~15년 재정건전화 전망과 분해

(단위: 십억유로)

	2013	2014	2015
총 재정건전화 금액	3.5	3.1	2.0
지출	2.25	2.0	1.3
경상지출	1.70	1.9	1.3
자본지출	0.55	0.1	0.0
수입	1.25	1.1	0.7
신규	1.03	0.9	0.6
이월	0.22	0.2	0.1

자료: 재무부, Medium-Term Fiscal Statement(2012.11.15)

- (노동시장) 2012년 실업률이 더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은 악화
- 2013년 성장전망치의 하향조정을 감안하여 2013년의 고용수준은 평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1 결산 국회 제출(2012.11.16)¹³⁾
 - FY2011 결산 세입결산총액은 109.9조엔, 세출결산총액은 100.7조엔 규모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9.2조엔

13) FY2011 결산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14) <http://www.parlamento.pt/Paginas/default.aspx>

〈표 17〉 FY2011 결산 개요

(단위: 억엔)

구 분	금액	참 고
1. 세입결산총액(수납공제세입액)	1,099,795	
2. 세출결산총액(지출공제세출액)	1,007,154	
3. 재정법 제 41조1)의 잉여금	92,641	(1-2)
4. FY2010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 잔액	0	
5. FY2011 신규발생 잉여금	92,641	(3-4)
6. FY2012 이월세출예산재원	70,568	
7. 이월세출예산재원 공제 후 신규발생잉여금	22,072	(5-6)
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으로서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한 금액	2,282	
9. 재정법 제 6조의 순 잉여금	19,790	(7-8)

주 1. 재정법 제 41조-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그 익년도 세입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한다.

주 2. 재정법 제 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잉여금 가운데 1/2을 유포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다음 회계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 상환 재원에 충당해야만 한다.

자료: 재무성, 'FY2011 결산의 개요', 2012.11.16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 포르투갈

1. 예산·결산 등

- 포르투갈 의회, 2013년도 국가예산안 최종 승인함(2012.11.27.)¹⁴⁾
 - 포르투갈 의회는 2013년도 국가예산안 최종표결에서 사민당(PSD)과 국민당(CDS-PP) 연립정당의 압도적인 찬성 투표결과로 최종 승인하였음
 - 지난 10월31일에 있었던 2013년도 예산안 1차 투표, 11월26일 예산관련 추가토론을 통해 11월27일 2013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 2013년도 예산안은 정부지출을 13억유로 줄이고, 세금을 43억유로 늘리는 강도 높은 긴축 예산안이며, 총 53억유로 규모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담고 있음
- 2013년도 예산안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의 80% 이상이 세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11월26일에 있었던 예산관련 추가토론 후에 달라진 2013년 예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이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축되었으며, 최저 등급 과세율이 기존 11.5%에서 14.5% 증가함
 - (가산세) 가산세의 경우 정부의 초기 예산안에서는 4%였으나 3.5%로 인하함
 - (연대세) 소득기준별로 8만유로 이상 연간소득자에게 2.5%를 부과하며 25만유로 이상 연간소득자에게는 5% 부과함
 - (자본소득세) 자본소득세는 30%에서 35%로 인상될 예정이며, 100만유로 이상 고급주택의 인지세를 0.8%인상할 예정임
 - (유류세) 가솔린은 리터당 6.5센트에서 6.6센트, 디젤은 8.7에서 8.9센트 인상함
 - (휴가보조금) 월 기본급 600~1,100유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휴가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지급 중단을 할 예정이며, 1,100유로 이상 공무원에 대한 휴가보조금은 삭감할 예정이며, 월 1,100유로 이상 연금수혜자에 대한 휴가보조금은 90% 삭감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경선 연구원〉

정책 흐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 한국 재정개혁 성과, 국내·외 학자 최초로 공동 평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안이 2012년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11. 2~13, 서면심의)에서 의결되어 '12. 6(목)에 고시·시행될 예정
- 동 개정안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술 목록을 조정하고 조세감면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참고: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율〉

법인·소득세	취득·등록·재산세	자본재 도입시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 3년간 100%

- 주요 내용
 - (대상기술목록 조정) [별표 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열거된 항목 개정
 - 의료용 로봇, Big data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 모바일 게임 기술 등 향후 유망하고 체계적인 산업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33개 기술 추가
 - 기술 발전에 따라 고도기술로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 삭제
 - 현재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4개 기술 수정
- (조세감면 절차 개선)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기한 및 연장가능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상의 의견을 신청인에게도 고지함

- 기대효과
 -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 기술 도입, 자본유치 가능
 -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산업간 형평성 도모와 세수 확보
 -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여부 판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 민원절차의 투명한 운영 및 신청인에 기대이익 부여

참고 신·구 조문 대비표(규정 본문)

현 행	개정안
<p>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p> <p>①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p> <p>①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부 칙 <신 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삭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3개월간 종전의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을 적용한다.</p>

한국 재정개혁 성과, 국내·외 학자 최초로 공동 평가

- PEMNA 고위급 콘퍼런스 결과 -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에서 발표한 「한국 재정개혁 성과, 국내·외 학자 최초로 공동 평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아·태 재정협력체(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고위급 콘퍼런스에서 국내 전문가와 세계적 재정 전문가가 공동으로 한국의 4대 재정개혁*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논의하였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이번 논의는 최초로 시도하는 국내·외 공동연구(한국-WORLD BANK-OECD)과제인, ‘우리나라 재정개혁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4대 개혁 과제별로 성과와 개선과제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음

■ 세계은행(WB) 로버트 텔리어치오(Robert Taliercio), OECD 존 브론달(Jon Blondal) 등 세계적인 재정분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절히 추진되었으며, 복지지출, 저출산·고령화 등 향후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재정제도의 선진화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재정개혁 과제가 충실히 수행되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음

-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국가부채 규모를 GDP

대비 30% 정도로 유지한 것도 이러한 재정제도 선진화에 기인한 바가 있다고 평가

■ 4대 개혁과제별로 성과는

•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 시계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정책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 **(Top-down 예산제도)**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부처 자율성 확대 등에 따른 배분적·기술적 효율성 제고 및 과도한 지출증가 억제

• **(재정성과관리제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하고 사업개선 유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선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총량 관리 및 재정집행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정책 대응의 효과성 제고

■ 아울러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추진된 개혁프로그램으로 재정개혁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음

• 향후 전략적 재원배분계획 상이에 따른 연동계획의 실효성 확보, Top-down 예산제도와 국회 예산심의제도와의 조화방안 등

- 최종보고서는 이번 콘퍼런스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추가 발표회를 거쳐 발간될 예정임

참고 1 한국의 재정개혁 성과 논의 주요내용

1 한국 재정개혁의 개관과 국가재정운용계획

1. 4대 재정개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 새로운 재정운용 시스템의 필요성
 - '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
 -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률 하락
 - 중장기적 시점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와 정책적 재원배분의 연계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 2004년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및 중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리스크 관리
 - 과거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세웠던 경험
 - 1962년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 1982년부터 예산실 내부적인 중기재정계획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2. 9년간의 경험과 교훈

-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증진
 - 예산의 점증주의 약화와 전략적 자원배분 경향 강화
 - 일선 부처들에 중기적 시계의 재원 운용 방향 제시
 -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 중기재정제도의 성공적 도입
 - 도입에 대한 정치적 의지(Commitment)가 중요
 - 초기의 성공적 운용이 향후 제도의 유지에 중요

- 중기재정제도를 둘러싼 여러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
- 개별 국가의 상황에 적절한 수준에서 도입하여, 점차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

-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
- 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감축시 위기 이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수준으로 복귀

3. 성공적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정치적 요소의 고려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격
 -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화
 - 전략적 재원배분계획의 상이함에 따른 연동계획의 실효성
 -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적절한 역할
- 재정의 유연성과 예측가능성 간의 적절한 조화
 - 재정의 두 가지 큰 목표인 경기대응과 재정건전성의 조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중기적 시점의 재정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 계획 준수에 얽매어 유연한 경기대응능력을 상실해서는 곤란

2 Top-down 예산제도

1. 제도 도입의 배경과 특징

- 전통적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op-down 예산제도 도입
 -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제도의 한계
 - 단년도 위주의 근시안적 예산편성에 의한 효율성 저하

-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적 우선순위 반영 곤란
-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 정보비대칭에 따른 예산부서와 지출부서 간 전략적 게임 가능성
- 부처의 자율성 제한

- 재정 효율성 제고 중심 Top-down 예산제도의 도입
 -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OECD국가와 달리, 분권과 참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

2. 성과와 한계

- 성과
 -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으로 배분적 효율성 제고
 - 재원배분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과정 제도화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연계함으로써 기술적 효율성 제고
 - 예산총액 설정과 합리적 예산배분으로, 과다 예산요구에 따른 대폭 삭감 관행 개선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
 - Top-down 제도 도입 전 3년 간 예산요구 평균 증가율 16.9%였으나, 제도 도입 후 9년 간의 예산요구 평균 증가율이 3.7%
- 한계
 - 미시적 예산편성 관행의 지속
 - 사전적 예산통제에서 사후적 예산통제로 전환되어야 하나, 여전히 사전적 통제가 지속되어 이중 통제에 따른 실무 부처들의 불만 제기
 - 지출상한이 상향적 방식으로 설정됨으로써 지출상한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곤란
 - 지출상한 유형이 과다하여 부처의 자율성 제약

- 총지출상한, 분야별 상한, 부처별 상한, 계정별 상한 등 지출상한의 수가 200개가 넘고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제약

3. 제도적 제약과 향후 과제

- 제도적 제약
 - Top-down 예산제도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
 - 한국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Top-down 예산제도가 행정부 내부절차로 국한될 가능성
- 향후 과제
 - 지출상한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실무부처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
 -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개선 필요
 -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이 예산총액 설정, 분야별 재원배분 후 각 부처별 예산심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3 재정성과관리제도

1.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현황

- (제도 도입)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재정성과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시도되었으며, '0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 (제도 현황)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고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
 - 재정성고목표관리제도는 매년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점검하고 평가하여 사업별 등급을 결정하는 제도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중요도가 높거나 쟁점이 있는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2.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특징

- **(성과와 예산의 연계)** 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구조로 예산편성과정과 적극적 연계
- 재정당국은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위해, 상위 정책 목표보다는 단위사업 중심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 행정부 내의 재정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입법화와 더불어 감사원과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감사원이나 입법부가 개입된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책임성 강화와 제도 발전의 추가동력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수단으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순응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

3.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과와 정책과제

- 제도운영 성과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 하여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
 - *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삭감
 - ** 성과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예산 변동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사업 부처 스스로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노력
 - 재정사업 운영 시, 성과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사례 :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의 경우, 기존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계약 중심으로 추진되어 취업

률과 탈수급률에 상당한 성과를 창출

■ 정책과제

- 고위 의사결정자가 재정성과관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을 활용하는 체제 마련 필요
- 재정성과관리와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 성과평가 총괄 조직을 강화하여, 제도의 운영뿐 아니라 실제 평가기준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에도 성과관리와 평가관련 전담 조직으로 운영 필요
- 간접비 배분 등 재정사업의 비용 정보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 마련 필요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과제의 의미

- 한국 재정혁신의 한 축으로서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의 개념을 일부 재정립할 필요
- 전산화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미를 국한할 경우, 다른 재정개혁과 비교하여 다소 이질적인 특성
 - 예산제도가 예산(편성)을 국정 및 그에 따른 재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념으로 볼 때, 정보시스템은 예산제도라는 인프라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차 인프라에 해당
 -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혁과제는 재정관리 개혁(PFM Reform)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시스템 도입과 동등한 비중의 과제를 여러 개 포괄
 - 예산분류체계, 회계제도, 정부의 범위 등 재설정
- 따라서 2000년대 중반에 추진된 일련의 재정개혁

은 아래와 같은 구도로 개념을 재설정할 수 있음

① 예산제도의 개혁

- 중기재정의 도입(국가재정운용계획)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

② 국고·회계관리제도의 개혁(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혁)

- 전산화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dBrain)
- 예산분류체계 개선(프로그램 예산분류)
- 회계제도 개선(발생주의 결산)
- 정부의 범위 재설정(GFS2001 기준 적용)

- 한국의 재정개혁은 선진 재정관리(PFM) 시스템 구현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제반 개혁과제를 포괄적으로 기획·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의 효과

■ 재정총량관리 역량 개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집적되는 재정정보를 통하여 재정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총량의 실시간 파악·관리 능력 제고
-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부문의 집행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정책대응의 효과성 제고

■ 재정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대부분의 재정관련 업무가 dBrain(실시간 On-line화)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과제의 시사점

■ 재정개혁 과제간 연계

- 한국의 사례는 재정관리 개혁(PFM Reform)과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개혁과제간 세밀하게 연계되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좋은 선례

- 프로그램 예산분류를 우선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재정개혁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

■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방식

- 한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은 현지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LDSW; Locally Developed Software) 방식을 채택
- * 현재 상용 패키지(COTS; Commercial Off-the-Shelf Packages)에 근거한 재정정보시스템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다수
- 맞춤형 방식은 사용자의 needs에 부합하고 시스템 유지 및 확장성 등에 장점이 있어, 한국과 예산·회계·결산의 절차 등이 비교적 유사한 많은 개도국에서 빠르게 적용 가능

참고 한국의 재정개혁 주제별 공동 연구자

주 제	공동 연구자
총괄	•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Jon Blondal
한국 재정개혁의 개관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 한국조세연구원, 홍승현 박사 • World Bank, 아태국 Lead-Economist Robert Talierno
Top-down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 연세대, 하연섭 교수 •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Jon Blondal • 기획재정부, 이강호 과장
재정성과관리제도	•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옥 박사 • World Bank, 경제관리국 과장 Jim Brumby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 박사 • World Bank, 재정 Specialist Cem Dener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국내의 학자 “韓 재정제도개혁 정착 단계”

‘PEMNA’ 고위급 콘퍼런스에서 발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에 시행한 재정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소기의 선진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공동으로 재정개혁 공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톱-다운제),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한국의 4대 재정개혁 과제의 공과를 진단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계은행(WB)의 로버트 텔리어치오 재정분야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한국조세연구원의 홍승현 박사가 맡았다. 이들은 2004년 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한 이후 재정정책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일선 부처에 중기적 시계의 재원운용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조화시킬 것을 권고했다. 톱-다운제는 존 브루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과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이 분석했다. 2004년 톱-다운제를 도입하고 나서 9년간 예산요구 평균증가율은 3.7%로, 도입 이전 3년간의 평균증가율(16.9%)보다 훨씬 낮았다. 보고서는 “합

리적인 예산배분으로 기존의 ‘지나친 예산요구-대폭 삭감’ 관행을 개선해 행정낭비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적인 예산통제가 여전히 고지출상한 유형이 200개가 넘어 부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점은 한계라고 봤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짐 브럼비 WB 경제관리국 과장과 박노옥 조세연구원 박사가 집필했으며 성과미흡 사업의 예산을 적극 삭감해 예산의 ‘점증(漸增)주의’ 관행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디브레인에 대해서는 실시간 재정업무를 가능하게 해 업무효율성과 정보투명성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2012-12-07)

“고졸-대졸, 능력차 작으데 임금격차 심해”

■ 조세연구원 보고서 “고졸채용 확대-반값 등록금 정책 상충돼 혼란 줄 수도”

한국의 고졸과 대졸 취업자 사이의 노동생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상충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퍼

낸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고졸이라고 해서 대졸 취업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과잉으로 인한 ‘하향 취업’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5곳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지수(5.224)가 가장 높았던 남동발전은 고졸 채용비율이 36.02%로 전체에서 2번째로 높았다. 반면 한전은 고졸 인력비율이 26.20%로 6곳 중 2번째로 고졸을 적게 채용했지만 노동생산성지수가 2.145로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낮았다. 이처럼 학력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컸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한국 대졸자의 임금은 16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졸자들이 자신에게 안 맞는 일이나 직업을 하향 선택할 경우 업무 동기, 임금 만족도가 떨어져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여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청년들에게 엇갈린 정보를 제공해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고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 제도는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졸자와 고졸자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고졸자, 대졸자에게 맞는 직무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고졸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2-12-03)

고졸채용 확대와 반값 등록금에 모순

현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과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은 서로 모순적이어서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기관 고졸 채용 현황’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반값 등록금과 고졸 채용 확대논의는 사회에 상충적인 시그널을 보낼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으로 대졸자와 고졸자가 ‘과거 고졸이 맡았던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졸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졸자 희생에 따른 결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봐야 한다”며 “고졸자들의 취업이 대졸자의 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2012년 사이 고졸자의 실업자 수는 38만 4,000명에서 30만 4,000명으로 줄었지만 대졸 실업자는 27만 5,000명에서 32만 1,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졸자(15~19세)의 실업률(2·4분기 기준)은 14.2%에서 6.8%로 하락했지만 대졸 이상자(20~29세) 실업률은 7.6%에서 8.7%로 상승했다.

고졸 채용 확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력관리와 ‘선 취업 후 취학’의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연구위원은 “고졸자와 대졸자에 적합한 직무를 명확하게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단순히 취업을 위해 대학에 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2-12-02)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위험확률 가장 높아”

- 조세연구원 재정패널 학술대회 -

60세 이상 고령층이 채무위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김경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위험상태 지속성에 대한 특성 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위험상태에 처한 가구의 인구·경제적 특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채무위험상태를 경험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약 1.9배의 확률로 채무위험상태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에 위험확률이 정점에 도달하기도 해 고령층 재무상태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계층이라고 김 연구원은 진단했다.

고용상태가 일용직인 가구주는 채무위험상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자녀에 대한 지출로 따른 과도한 대출로 자산 여력이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녀 수에 따른 자녀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우리 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경제적 취약층의 채무상태 악화의 지속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율적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고령층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11-27〉

재정포럼

2012년 12월호 통권 제19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12월 17일 발행 / 제16권 제12호(통권 제19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 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 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